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입 법 예 고

고양시 공고 제2024-148호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1
고양시 공고 제2024-155호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양시 공고 제2024-157호	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15
고양시 공고 제2024-160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양시 공고 제2024-161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7
고양시 공고 제2024-163호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45
고양시 공고 제2024-166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2
고양시 공고 제2024-171호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2
고양시 공고 제2024-173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0
고양시 공고 제2024-185호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8
고양시 공고 제2024-186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7
고양시 공고 제2024-187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53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4-19호	도시계획시설[광장 48호, 하천 3호, 광장 2호 (자유로 횡 단 보도육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74
고양시 고시 제2024-21호	도로명주소 고시	177

차 례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4-127호

공인 폐기 공고

179

고양시 공고
제2024-164호

일반수도사업인가(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열람 공고

180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버스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시 운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에 대하여 1순위 시내버스, 2순위 마을버스로 규정되어 있으나, 운송사업자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2조).
-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버스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4층 버스정책과
- 전 화 :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031-8075-2956)
- 팩 스 : 031-8075-499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조례”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시내버스”를 “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종점”을 “기점·종점”으로 한다.

제3조 중 “제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제5조제2항 단서”로, “분할납부하고자 할”을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하는”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받고자”를 “받으려고”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하고자”를 “결정하려고”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부된”을 “부과된”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버스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버스정책과 김 종 구
	팀장 성명	버스정책팀장 김 관 양
	담당자 성명·전화	조 항 민 031-8075-2956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기준)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고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고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고양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4. (생략) 제3조(사용료 납부절차) 조례 제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할납부 도래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u>시행에</u>----- -----. 제2조(사용허가 기준) <u>고양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1. -----<u>시내버스</u> <u>또는 마을버스</u>----- <삭 제> 3. -----<u>기점·종점</u>----- ----- 4.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료 납부절차) ----<u>제5조제2항 단서</u>-----<u>분할하여 납부하려고 하는</u>----- ----- ----- ----- ----- <u>납부해야</u>-----. 제4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 ----- -----<u>받으려고</u>----- ----- ----- ----- ----- -----<u>제출해야</u>-----.

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체결
해야-----.

③ -----
-----결정하려고-----
-----협의해야-----.

④ -----

-----부과된-----납부해야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고양시 미혼모·부 가족 지원사업’ 대상자의 소득조건이 「한부모가족 지원법」 및 여성가족부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 이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주교동, 충헌빌딩)
- 전 화 :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7)
- 팩 스 : 031-8075-491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연령”을 “나이”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1호 중 “미혼모·부 가족”을 “미혼 한부모가족”으로, “냉·난방비”를 “냉난방비”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혼모·부 가족”을 “미혼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따른다.

제7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누설하여서는”을 “누설해서는”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부모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여성가족과장 이 경 희
	팀 장 성 명	출산지원팀장 김 경 연
	담 당 자 성명·전화	양 수 옥 031-8075-3327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u>시행하여야</u>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u>시행해야</u>-----. ② ----- ----- ----- ----- -----<u>해야</u>-----.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u>시행하여야</u> 한다. ②~③ (생략)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u>협조하여야</u>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 ----- ----- -----<u>시행해야</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협조해야</u>-----.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u>연령</u>,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생략)	제5조(지원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나이</u>-----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 <u>미혼모·부 가족</u>에 대한 동절기(1	제6조(지원사업)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미혼 한부모가족</u>-----

월, 2월) · 하절기(7월, 8월) 각 2개월간 <u>냉 · 난방비</u> 지원 12. <u>미혼모 · 부 가족</u> 중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족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생계비 지원(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최대 3년, 지급기준일은 매월 1일) 가. 소득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나. · 다. (생략) 13. (생략) <u><신 설></u>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u>냉난방비</u>----- 12. <u>미혼 한부모가족</u>----- ----- ----- ----- ----- <u><삭 제></u> 나. · 다.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 ----- ----- -----<u>노력해야</u>-----. 제11조(비밀 유지) ----- ----- -----<u>누설해서는</u>-----. <u><삭 제></u>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소상공인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22, 제3별관 1층

- 전 화 : 소상공인지원과 골목상권팀(031-8075-3737)

- 팩 스 : 031-8075-491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서의 변경)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고양시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소상공인지원과장 박 종 민
	팀 장 성 명	골목상권팀장 김 형 도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화 경 031-8075-3737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녹색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변경하고, 부서가 통합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녹색건축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건축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 전 화 : 건축정책과 녹색건축팀(031-8075-2807)

- 팩 스 : 031-8075-495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각각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으로 한다.

제12조 중 “2회 이내”를 “2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녹색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업무 담당부서의 장, 녹색건축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녹색건축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팀장으로 한다”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해당하는데도”를 “해당하는 데에도”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건축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건축정책과장 박 문 희
	팀장 성명	녹색건축팀장 이 수 진
	담당자 성명·전화	박 소 연 031-8075-2807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고양시민의 주거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이바지함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① 시장은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부지 내 건축물에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할 수 있다. 1.~4. (생략)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① ----- ----- ----- ----- -----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 -----.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제공의 범위는 「고양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1.~4. (생략)	② ----- ----- -----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 ----- ----- -----.
제12조(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게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제12조(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 ----- -----2회----- ----- -----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u>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건축업무 담당부서의 장, 녹색건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⑤ (생 략)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녹색건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생 략) 1.~3. (생 략)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데도</u> 불구하고 회피하지 <u>아니한</u> 경우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생 략) 1. (생 략)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u>아니한</u> 사람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녹색건축업무 담당 실장</u> -----<u>호선(互選)</u> 한다. ③ -----<u>녹색건축업무 담당 부서의 장</u>-----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u>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u> 제15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u>해당하는 데에도</u>----- <u>않은</u>-----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u>않은</u> -----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등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 적합하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진행 시 사용하는 서식 중 불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사업 진행 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규정함(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건축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 전 화 : 건축정책과 녹색건축팀(031-8075-2807)

- 팩 스 : 031-8075-495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 중 “받고자”를 각각 “받으려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건축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팀장 성명	녹색건축팀장 이수진
	담당자 성명·전화	박소연 031-8075-2807

[별지 제1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원 신청 내역	사업대상지					
	공사내용	☐ 외부창호 ☐ 단열공사 ☐ 조명 ☐ 그 밖의 사항()				
	총 공사비 (부가가치세 제외)	원	건물현황	연면적	㎡	
	지원 신청액	원		용도		
				규모	지하 / 지상	
		공사기간			주거현황	
	시공사 정보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공사도면, 견적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내 시공업체 선정 시 사업자 등록증(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첨부서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를 위해 수집·이용 및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자

▶ 고양시청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현장자문단, 에너지 성능개선 모니터링 분석기관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및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 사업 대상지에 대한 자문 및 현장 확인

4. 수집·이용 및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한전 및 도시가스 고객번호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보유 이후 안전하게 파기

6.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 정보제공동의자가 동의한 내용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법인)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정보제공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대상지					
공사 개요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공사 시공자	회사명		연락처		
	계약금액	원	관내 공사업체 선정 여부	☐ 여 / ☐ 부	
	주소				
위와 같이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공자(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공통 -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공사시공자) 사본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성실이행 및 청렴이행 서약서 -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지정서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성실이행 및 청렴이행 서약서

본인은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공사를 이행할 때 선정된 사항에 맞게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사상·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귀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은 귀 고양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 목적(공사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대 상 지						
공사 개요	건물규모	지하 / 지상		연면적(전용면적) (㎡)		
	착 수 일			완 료 일		
공 사 시공자	대 표 자			회 사 명		
	주 소					
정산내용	정산금액			입금계좌		
	계	시 보조 금액	자체부담 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원	원	원			
공사 내용	☐ 외부창호 ☐ 단열공사 ☐ 조명 ☐ 그 밖의 사항 ()					
한전 및 도시가스 고객번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완료 증빙서류(공사 완료 사진, 납품내역서) 2.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3.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u>받고자</u>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 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 <u>받으려고</u>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라 인증에 드는 비용을 <u>받고자</u>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에 드는 비용의 지 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 ----- <u>받으려고</u> ----- ----- ----- -----.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지원신청내역	대상지			
	총 공사비	원	건물규모	연면적(전용면적) ㎡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재)
	적용대상 총 공사비	원		
	지원 신청액	원		(지하 /지상)
	공사기간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설계서(내역서), 사진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사도면, 견적서, 수량산출서 -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원신청내역	사업대상지			
	공사내용	☐ 외부창호 ☐ 단열공사 ☐ 조명 ☐ 그 밖의 사항()		
	총 공사비 (부가가치세 제외)	원	건물현황	연면적 ㎡
	지원 신청액	원		용도
	공사기간		주거현황	규모 지하 /지상
	시공사 정보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공사도면, 견적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내 시공업체 선정 시 사업자 등록증(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 업 계 획 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첨부서류)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소 유 자			
주 소			
용 도		규모	지상() / 지하()
대지면적(㎡)		연면적(㎡)	
허가·준공연월일			

4. 에너지 사용량(신청일 기준 전년도 1년간)

구 분	전기사용량	연 료		
		도시가스	석유	기타
사용량(연간)	KWh/년	㎡/년	L/년	

※ 한국전력 및 한국 도시가스 등에서 발급

5. 에너지 성능 개선비용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절감률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보일러 등급			

6. 사업내용

○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보일러 등 설치(교체) 내역

(단위 : 원)

품 목	규격(설치면적)	설비용량, 모델명 등	비 용	비 고
계				

주)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고 고효율기자재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와 함께 품질보증서 제출

7. 그 밖의 사항

○ 시공업체

- 상 호 : (업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첨부서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를 위해 수집·이용 및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자

▶ 고양시청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현장자문단, 에너지 성능개선 모니터링 분석기관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및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 사업 대상지에 대한 자문 및 현장 확인

4. 수집·이용 및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한전 및 도시가스 고객번호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보유 이후 안전하게 파기

6.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 정보제공동의자가 동의한 내용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법인)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정보제공동의자)

(서명 또는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 / 연락처 :)

○ 특이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첨부서류)

본인(단체)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단체)에 관한 아래 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양시가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제공동의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관리를 위해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5년간 보유 이후 안전하게 파기

4. 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상지				
공사개요	건물규모	지하 / 지상	연면적(㎡)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공사시공자	대표자		회사명	
	주소			
	계약금액	원		
위와 같이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통 -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공사시공자) 사본 -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성실히행 각서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2.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대상지				
공사개요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회사명		연락처	
공사시공자	계약금액	원	관내 공사업체 선정 여부	☐ 여 / ☐ 부
	주소			
	위와 같이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통 -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공사시공자) 사본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성실히행 및 청렴이행 서약서 2.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지정서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성실이행 각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 첨부서류)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시공자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지원신청내역	대상지			
	총공사비	원	건물규모	연면적 m ² (지하 / 지상)
	건축주 공사보증금	원		
	지원신청액	원		

본인은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할 때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사상·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성실이행 및 청렴이행 서약서

본인은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공사를 이행할 때 선정된 사항에 맞게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사상·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귀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은 귀 고양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 목적(공사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상 지						
공사 개요	건물규모	지하 / 지상		연면적(전용면적) (㎡)		
	착 수 일			완 료 일		
공 사 시공자	대 표 자			회 사 명		
	주 소					
정산내용	정산금액			입금계좌		
	계	시 보조 금액	자체부담 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원	원	원			
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창호 ☐ 보일러 ☐ 기타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완료보고서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2. 지출증명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3.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별지 제4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대 상 지						
공사 개요	건물규모	지하 / 지상		연면적(전용면적) (㎡)		
	착 수 일			완 료 일		
공 사 시공자	대 표 자			회 사 명		
	주 소					
정산내용	정산금액			입금계좌		
	계	시 보조 금액	자체부담 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원	원	원			
공사 내용	☐ 외부창호 ☐ 단열공사 ☐ 조명 ☐ 그 밖의 사항 ()					
한전 및 도시가스 고객번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완료 증빙서류(공사 완료 사진, 납품내역서) 2.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3.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사업 완료 보고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첨부서류)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20 ~ , (개월)

3. 건축물 현황

소유자			
주 소			
용 도		규모	지상()/지하()
연면적(전용면적) (㎡)		사용승인일	

4. 시공업체

- 상 호 : (업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 / 연락처 :)

5. 사업내용

○ 창호 및 단열재, 설비 설치(교체) 내역

(단위 : 원)

설비, 수리 (교체)내용	규격(설치면적)	설비용량, 모델명	비용	비 고
계				

○ 시설 개선 사항

○ 신설, 교체 사진

계 목		
장소 및 내용		
사 업 전	사 업 중	사 업 후

※ 항목별 각각 전·중·후 사진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보다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 등을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5조 및 제14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하수행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5층(주교동)

- 전 화 : 하수행정과 하수행정팀(031-8075-4562)

- 팩 스 : 031-8075-494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를 “이바지”로,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법”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중 “공포”를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월 말”을 “6월 30일”로, “8월 말일”을 “8월 31일”로, “12월 말일”을 “12월 31일”로, “다음연도 2월말일”을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하수행정과
입안자	과장 성명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팀장 성명	하수행정팀장 최희숙
	담당자 성명·전화	최연진 031-8075-456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 ----- -----<u>이바지</u>----- -----「지방공기업법」----- ----- ----- ----- -----.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5조(조직) ① ----- ----- <u>범위</u>----- ----- ----- ----- -----. <삭 제>
제6조(관리자의 책임) 별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삭 제>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은 해당 연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생략)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
-----6월
30일-----8월
31일-----12월 31일-----
-----다음 연도 2월 말일-----
-----제출해야-----.

1. (현행과 같음)

2. -----
-----한정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공고해야-----.

<삭제>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최근 착공한 일산테크노밸리(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추가 지원 혜택을 마련하고 그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투자유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마.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혜택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바. 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 사. 투자유치 유공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32조).
-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 전 화 :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유치팀(031-8075-3217)
 - 팩 스 : 031-8075-493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사업”이란 투자유치를 통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는 개발사업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투자유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기업 및 법인 등이 시의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토지의 매입, 건축물의 축조 및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의 투자를 통해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 신설, 증설하도록 유치하는 것
 -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지원금”이란 시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의 입지·고용·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사후관리기간”이란 시장이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9.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 나. 제조업 외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10.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사업 및 그 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발굴, 촉진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도시 계획·개발 업무 담당 실장·국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투자유치 관련 전문 기관·단체 및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학계의 교수
4.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
5. 그 밖에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품·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의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전이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제13조(투자유치기금의 설치)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4조(기금의 조성 및 출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기금의 출자·출연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의 지급
2. 투자유치를 위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3. 투자유치를 위한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4.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②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장과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참여 의사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④ 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7조,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금심의위원회”로,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통

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 있는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장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등

제21조(지원 대상)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3,30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토지를 매입한 경우 상한금액에 제한 없이 3,305제곱미터당 80만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각각 100분의 50씩 지원한다.

③ 입지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

용하는 경우 또는 신규채용 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4조(행정지원)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관련 규제·고충 사항 등을 발굴·처리를 위하여 전담 부서 지정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사항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제26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지원금 제출서류)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투자이행각서, 사업계획서 등
3.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제28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등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의 추진 상황, 지원금의 취소 및 환수 사유 해당 여부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금 지급의 원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의무의 이행 및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점검 및 요구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9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를 포함한다.

1. 토지매입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토지매입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4. 입지보조금을 받고 사후관리기간 내에 매입한 토지와 건축물 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입지보조금을 받고 사후관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7. 그 밖에 지원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및 이자의 환수에 관한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장 투자유치 활동 등

제30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투자유치 홍보활동 활성화) ① 시장은 각 투자유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홍보를 위한 콘텐츠 공모사업
2. 투자유치 수요 발굴과 촉진 활동
3.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와 투자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하나의 실적에 대한 포상금은 민간인의 경우 1억원, 공무원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

운영 중인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되는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투자유치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 대 영
	팀 장 성 명	기업유치팀장 배 응 기
	담당자 성명·전화	오 봉 선 (031-8075-3217)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투자유치사업”이란 <u>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 고양시의 기업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사업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u> 2. “국내기업”이란 <u>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u> 3. “국내복귀기업”이란 「<u>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등이 <u>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u> 나. 관내 기업이 업종을 다르게 하여 <u>창업하는 경우</u> 다. 기존 업태를 확장하여 <u>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u>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u>위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u> 8. “연구소”란 「<u>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투자유치사업”이란 <u>투자유치를 통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는 개발사업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u> 2. “투자유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 및 법인 등이 <u>시의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토지의 매입, 건축물의 축조 및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의 투자를 통해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 신설, 증설하도록 유치하는 것</u> 나.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u>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u>」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지원금”이란 <u>시가 투자유치사업</u>

현행	개정안
<u>연구기관을 말한다.</u>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10.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1. “사후관리기간”이란 시장이 투자기업에게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12. “투자비용”이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토지매입에 투자한 금액(토지·건물 임대 및 건축비 제외)을 말한다. 13. “주력산업”이란 관내 투자유치사업 구역에 시가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지원금”이란 시가 투자유치사업 구역에서 주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u>구역 내 입주기업 등의 입지·고용·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u> 8. “사후관리기간”이란 시장이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9.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10.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

현행	개정안
<u>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u>② 소위원회는 각각의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처리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u> <u>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u>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u> <u>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u>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u> <u>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임직원</u> <u>3. 투자·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u> <u>4.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u> <u>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u> <u>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u> <u>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u>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u> <u>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u>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 <u>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시장, 도시 계획·개발 업무 담당 실장·국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u> <u>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u> <u>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u> <u>2. 투자유치 관련 전문 기관·단체 및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u> <u>3. 투자유치 관련 학계의 교수</u> <u>4.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u>

현행	개정안
<u>제19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제1항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투자비용 기준은 토지 3,30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매입한 기업을 말한다.</u> <u>제20조(지원금 등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이 제19조제2항을 충족할 경우 상한금액에 제한 없이 토지 매입비를 3.305제곱미터 당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u> <u>② 토지매입비 지원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각각 100분의 50씩 지원한다.</u> <u>③ 토지매입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5. 그 밖에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u> <u>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제21조(지원 대상)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제22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3,30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토지를 매입한 경우 상한금액에 제한 없이 3.305제곱미터당 80만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각각 100분의 50씩 지원한다.</u> <u>③ 입지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제23조(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또는 신규채용 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u>

현행	개정안
<u>제23조(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사항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한다.</u> <u>② 외국인 투자기업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그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u> <u><신 설></u>	<u>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각각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u> <u>④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u> <u>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사항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다.</u> <u>②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u> <u>제28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등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의 추진 상황, 지원금의 취소 및 환수 사유 해당 여부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u>

현행	개정안
<u>제29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하나의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포상금은 기여비율에 따라 지급한다.</u>	<u>검한 결과, 지원금 지급의 원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의무의 이행 및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u> <u>③ 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점검 및 요구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u> <u>제32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하나의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각 기여자의 기여 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하나의 실적에 대한 포상금은 민간인의 경우 1억원, 공무원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u>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등 10개 법률이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일괄 시행 (2024. 5. 17.)됨에 따라 개편되는 국가유산 분류 체계에 맞춰 변경되는 용어와 2011년 일부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맞지 않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함.
- 나. 현행 조례의 ‘향토문화재’ 용어를 ‘향토유산’으로 변경함.
- 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의 조문을 통폐합함.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문화예술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 전 화 :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정책팀(031-8075-3396)

- 팩 스 : 031-8075-492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않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국가유산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유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역사·고고학·문화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향토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연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 및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④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경기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국가등록유산 또는 경기도등록유산으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향토유산의 관리) 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시보·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4조(향토유산의 보호)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방안 수립
2. 향토유산의 조사 및 기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향토유산 안내표지판 설치) 시장은 향토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6조(기록작성 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에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향토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정

된 향토문화재는 이 조례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고양시향토문화재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양시향토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고양시향토문화재위원회”를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로 한다.

②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장 성명	문예술과장 서 은 원
	팀장 성명	문화유산정책팀장 김 용 만
	담당자 성명·전화	김 수 현 031-8075-3396

고양시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향토유산의 종 별	지정 기준
문화유산	1. 건조물로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 · 궁전 · 성문 · 전묘 · 사우 · 서원 · 누정 · 향교 · 관아 · 객사 · 민가 등으로서 역사적 · 학술적 ·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 석탑 · 전탑 · 부도 및 석종 · 비각 · 석등 · 석교 · 석계 · 석단 · 석빙고 · 첨성대 · 당간지주 · 석표 · 석정 등으로서 역사적 · 학술적 · 예술적 ·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 · 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 로서 역사적 · 학술적 · 예술적 ·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전적 · 서적 · 고문서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1)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 · 한자서적 · 저술교본 ·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 ·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 학적 가치가 있는 것 3)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서적류 사경 · 어필 · 명가필적 · 고필 · 목적현관 · 주련 등으로서 서예 사상 우수한 것이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다.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 · 조각 가. 형태 · 품질 · 기법 · 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회화 또는 조각으로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 라. 역사상 우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작품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 · 품질 · 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의 유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 · 패총 또는 사적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라. 종교 · 교육 · 학예 · 산업 · 정치 · 군사 · 생활 등의 유적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고 학술적 자료 또는 제작 기술상 가치가 있는 것 6. 무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있는 것 7. 유사이전의 유적 가. 패총 · 유물포함층 · 주거지(수혈주거지 · 부석주거지 · 동혈주거지 등) 지석 · 입석 · 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8. 제사 · 신앙에 관한 유적 가. 사지 · 사우지 · 제단 · 사고지 · 전묘지 · 향교지, 그 밖에 제사 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9. 정치 · 국방에 관한 유적 가. 성곽 · 성지 · 책채 · 방루 · 진보 · 수영지 · 관문지 · 봉수대 및 유지 · 고전장 · 도읍지 · 궁전지 · 고도 · 고궁, 그 밖에 정치 · 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0. 산업 · 교통 · 토목에 관한 유적 가. 고도(옛길) · 교지 · 뚝 · 제방 · 요지 · 시장지 · 식물재배지 · 석표, 그 밖에 산업교통 · 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1. 교육 · 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가. 서원 · 사숙 · 자선시설 · 석각, 그 밖에 교육 · 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2. 분묘 가. 분묘 · 비 · 구택 · 원지 · 정천 · 수석, 그 밖의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	---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 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의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공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14.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것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자연유산	1. 명승 가. 유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나. 진귀한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다. 유명한 협곡·급류·심연·폭포·호소 등 라. 그 밖의 명승지 마. 유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바.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온천지·냉광천지

	2. 천연기념물 가. 동식물 1) 지방특유의 동식물로서 진귀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2) 석회암지대·사구·동물·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장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3)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4) 지방특유의 축양동물 5)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상 가치가 있는 사충·명목·거수·노수·기형목 6)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산림상 7) 진귀한 동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8) 생활·민속·의식주·신앙·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9)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의 중요한 표본과 화석 나. 지질·광물 1)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2) 거대한 석회 등 또는 저명한 동굴 3)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진귀한 지형 4)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5) 학술상 특히 진귀한 표본 6) 온천 및 냉광천 다. 천연보호구역 1)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2)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3)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라. 자연현상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무형유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연극 : 인형극·가면극 2. 음악 :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3. 무용 :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기공예 · 피모공예 · 골각공예 · 금속공예 · 나전칠공예 · 제지공예 · 목공예 · 건축공예 · 지물공예 · 식물공예 · 염색공예 · 옥석공예 · 수 · 매듭공예 · 복식공예 · 악기공예 · 초고공예 · 죽공예 · 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 · 놀이 · 무예 · 음식제조 등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 · 수리 등의 기술
--	---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구분	유형/종목				
현황	명칭	한글		한자	
		영문			
	시대/연대				
	소재지				
	구조/형식/형태				
	재료/품질				
	수량/크기/규모				
	현재 용도 / 기능				
	소유자(관리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연혁/유래/특징					
관리 단체(안)	단체명		대표자		
	지정 신청사유				
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					

향토유산 개요

1. 일반 현황

명칭	(한자:)	
소재지(보관 장소)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재료/품질		
수량/규모/크기		
현재 용도/기능		
소유자 (단체)	성명 (기관)	
	주소	
관리자 (단체)	성명 (기관)	
	주소	

2. 연혁, 유래 특징

3. 지정 가치 및 근거

4. 학술·고증 자료

5. 사진자료

(4쪽)

6. 위치도,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7. 향토유산 보존(정비)·활용 계획

8. 그 밖의 참고자료(문헌, 과학적 분석 자료 등)

향토유산 취득 경위서

☐ 유산명 :

☐ 보관장소 :

☐ 소유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취득경위 :

본인은 위 향토유산 취득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6쪽)

<취득경위 증명자료>* 작성요령 참고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

☐ 향토유산명 :

☐ 수량 :

☐ 소재지 :

☐ 소유자

○ 주소 :

○ 성명 :

○ 연락처 :

위 향토유산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 작성요령 >

- 형식: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
- 향토유산 개요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생략, 목차 순서 변경 가능
-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별도 제출
- 향토유산 취득경위서 작성 시, 명확한 증명자료 제출
 - ① 은사로부터 수령한 경우, 신청본이 은사스님이 계셨던 사찰이나 조계종 등 종단의 재산인지 여부
 - ※ 사찰재산인 경우, 상세 이동 연혁
 - ② 경매로 구입한 경우, 유물의 원 소장처와 원소장자 자료 제출
 - ☞ 미제출의 경우, 향토유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③ 신청본이 현 유산 소재지와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위와 연혁 제출.
 - 예) 사찰 봉안·소장 자료: 사적기, 사진, 그 밖의 문헌자료 등 봉안·소장 이력
(불경: 사찰에서 승려 교육이나 강경 자료로 활용한 이력, 불화 : 소유 사찰에 설치되어 왔거나 사찰 행사시 사용 한 이력)
 - ④ 신청자가 대상 유산의 원소유자·소유집단과 다르거나 원 소유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양도확인서 등 소장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와 도난 여부 관련 자료
 - 예) 특정 문종에서 유래한 유물을 그 문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어려운 사람이 지정 신청할 경우 해당 문종의 인지 여부 등
- 소유주가 문종인 경우, 문종 회의록 등 향토유산 지정을 동의하는 자료 제출

<참고사항>

- ◆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등 안내
 1. 향토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2. 향토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3.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5. 향토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등
 6. 향토유산 보존 정비 활용계획(안)
 7.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8. 유물취득 경위서(유형문화유산) 및 증명자료
 9.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 유형문화유산일 경우 제2호 및 제5호 제외

고양시 향토유산 제 호

향토유산 지정서

- 명 칭 :
○ 구 분 :
○ 소재지 :
○ 수 량 :

위를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고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앞면)

27cm×19cm

(뒷면)

소유자	주소	소재지	교부 연월일	기록인
(변경사항)				
소유자	주소	소재지	변경 연월일	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illegible]

고양시 향토유산 대장

(전면)

종별		지정 번호		명칭			지정 연월일				찾아보기 번호	
분야		형식 또는 형태		구조		규격		제 작 자				
				재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수량		소 유 자	주소	관리자 및 관리단체	주소		점 유 자	주소		
					성명					성명		
부속 시설물 등					연대							
지정사유												

(뒷면)

연혁 (유래 · 전설 · 현황 · 특징)		관리 상황(지정 및 변동사항 등)	
년월일		년월일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u>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문화재 환경보존 및 정비개발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고양시 향토문화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재란 관내에 있는 50년이 경과한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를 말한다. <u>제16조(향토문화재 지정)</u> 향토문화재의 지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u>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u>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고양시의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않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국가유산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유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u>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u>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 및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현행	개정안
	<u>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했어야 한다.</u> <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u> <u>④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경기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국가등록유산 또는 경기도등록유산으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u> <u>제12조(향토유산의 관리) 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u>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의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u> <u>제14조(향토유산의 보호)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u> <u>1. 향토유산의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방안 수립</u> <u>2. 향토유산의 조사 및 기록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u> <u>제15조(향토유산 안내표지판 설치) 시장은 향토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현행	개정안				
<신설>	[별표] 고양시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table border="1"> <tr> <th>향토유산의 종 별</th><th>지정 기준</th></tr> <tr> <td>문화유산</td><td> 1. 건조물로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묘·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각·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철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전적·서적·고문서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1)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교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있는 것 3)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서적류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목적현관·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우수한 것이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다.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회화 또는 조각으로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 라. 역사상 우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작품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td></tr> </table>	향토유산의 종 별	지정 기준	문화유산	1. 건조물로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묘·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각·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철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전적·서적·고문서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1)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교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있는 것 3)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서적류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목적현관·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우수한 것이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다.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회화 또는 조각으로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 라. 역사상 우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작품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향토유산의 종 별	지정 기준				
문화유산	1. 건조물로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묘·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각·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철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전적·서적·고문서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1)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교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있는 것 3)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서적류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목적현관·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우수한 것이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다.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회화 또는 조각으로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 라. 역사상 우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작품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현행	개정안
	4. 공예품 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의 유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폐총 또는 사적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고 학술적 자료 또는 제작 기술상 가치가 있는 것 6. 무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있는 것 7. 유사이전의 유적 가. 폐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 지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8.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가.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 그 밖에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9.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가.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고궁, 그 밖에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0.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가. 고도(옛길)·교지·뜰·제방·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 그 밖에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1.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가.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2. 분묘 가.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그 밖의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의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공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126 279 1279 906"></td><td data-bbox="1279 279 2011 906">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14.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것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td></tr> <tr> <td data-bbox="1126 906 1279 1377">자연유산</td><td data-bbox="1279 906 2011 1377"> 1. 명승 가. 유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나. 진귀한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다. 유명한 협곡·급류·심연·폭포·호소 등 라. 그 밖의 명승지 마. 유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바.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온천지·냉광천지 2. 천연기념물 가. 동식물 1) 지방특유의 동식물로서 진귀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2) 석회암지대·사구·동물·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장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3)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4) 지방특유의 축양동물 5)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상 가치가 있는 사충·명목·거수· </td></tr> </table>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14.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것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자연유산	1. 명승 가. 유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나. 진귀한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다. 유명한 협곡·급류·심연·폭포·호소 등 라. 그 밖의 명승지 마. 유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바.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온천지·냉광천지 2. 천연기념물 가. 동식물 1) 지방특유의 동식물로서 진귀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2) 석회암지대·사구·동물·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장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3)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4) 지방특유의 축양동물 5)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상 가치가 있는 사충·명목·거수·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14.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것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자연유산	1. 명승 가. 유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나. 진귀한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다. 유명한 협곡·급류·심연·폭포·호소 등 라. 그 밖의 명승지 마. 유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바.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온천지·냉광천지 2. 천연기념물 가. 동식물 1) 지방특유의 동식물로서 진귀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2) 석회암지대·사구·동물·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장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3)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4) 지방특유의 축양동물 5)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상 가치가 있는 사충·명목·거수·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126 279 1279 863"></td><td data-bbox="1279 279 2011 863"> 노수·기형목 6)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산림상 7) 진귀한 동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8) 생활·민속·의식주·신앙·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9)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의 중요한 표본과 화석 나. 지질·광물 1)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2) 거대한 석회 등 또는 저명한 동굴 3)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진귀한 지형 4)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5) 학술상 특히 진귀한 표본 6) 온천 및 냉광천 다. 천연보호구역 1)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2)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3)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라. 자연현상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td></tr> <tr> <td data-bbox="1126 863 1279 1278">무형유산</td><td data-bbox="1279 863 2011 127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연극 : 인형극·가면극 2. 음악 :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3. 무용 :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기공예·피모공예·골각공예·금속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수·매듭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죽공예·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td></tr> </table>		노수·기형목 6)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산림상 7) 진귀한 동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8) 생활·민속·의식주·신앙·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9)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의 중요한 표본과 화석 나. 지질·광물 1)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2) 거대한 석회 등 또는 저명한 동굴 3)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진귀한 지형 4)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5) 학술상 특히 진귀한 표본 6) 온천 및 냉광천 다. 천연보호구역 1)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2)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3)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라. 자연현상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무형유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연극 : 인형극·가면극 2. 음악 :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3. 무용 :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기공예·피모공예·골각공예·금속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수·매듭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죽공예·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노수·기형목 6)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산림상 7) 진귀한 동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8) 생활·민속·의식주·신앙·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9)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의 중요한 표본과 화석 나. 지질·광물 1)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2) 거대한 석회 등 또는 저명한 동굴 3)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진귀한 지형 4)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5) 학술상 특히 진귀한 표본 6) 온천 및 냉광천 다. 천연보호구역 1)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2)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3)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라. 자연현상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무형유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연극 : 인형극·가면극 2. 음악 :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3. 무용 :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기공예·피모공예·골각공예·금속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수·매듭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죽공예·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현행	개정안																																																																																						
<신설>	[별지 제1호서식] (1쪽)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th> </tr> <tr> <th>구분</th> <th colspan="2">유형/종목</th> <th colspan="2"></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현황</td> <td rowspan="2">명칭</td> <td>한글</td> <td></td> <td>한자</td> <td></td> </tr> <tr> <td>영문</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2">시대/연대</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2">소재지</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2">구조/형식/형태</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2">재료/품질</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수량/크기/규모</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2">현재 용도/기능</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소유자(관리자)</td> <td>성명(명칭)</td> <td></td> <td>전화번호</td> <td></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2">연혁/유래/특징</td> <td colspan="3"></td> </tr> <tr> <td>관리</td> <td colspan="2">단체명</td> <td>대표자</td> <td></td> </tr> <tr> <td>단체(안)</td> <td colspan="4">지정 신청사유</td> </tr> <tr> <td colspan="5">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td> </tr> <tr> <td colspan="5">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 </td> </tr> </tbody> </table>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구분	유형/종목				현황	명칭	한글		한자		영문				시대/연대					소재지					구조/형식/형태					재료/품질					수량/크기/규모							현재 용도/기능					소유자(관리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연혁/유래/특징					관리	단체명		대표자		단체(안)	지정 신청사유				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구분	유형/종목																																																																																						
현황	명칭	한글		한자																																																																																			
		영문																																																																																					
	시대/연대																																																																																						
	소재지																																																																																						
	구조/형식/형태																																																																																						
	재료/품질																																																																																						
	수량/크기/규모																																																																																						
	현재 용도/기능																																																																																						
	소유자(관리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연혁/유래/특징																																																																																							
관리	단체명		대표자																																																																																				
단체(안)	지정 신청사유																																																																																						
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																																																																																							

현 행	개 정 안																		
	(2쪽) 향토유산 개요 1. 일반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명칭</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한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보관 장소)</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대/연대</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조/형식/형태</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료/품질</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량/규모/크기</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재 용도/기능</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유자 (단체)</td> <td> 성명 (기관) 주소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리자 (단체)</td> <td> 성명 (기관) 주소 </td> </tr> </table> 2. 연혁, 유래 특징 3. 지정 가치 및 근거 4. 학술·고증 자료	명칭	(한자:)	소재지(보관 장소)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재료/품질		수량/규모/크기		현재 용도/기능		소유자 (단체)	성명 (기관) 주소	관리자 (단체)	성명 (기관) 주소
명칭	(한자:)																		
소재지(보관 장소)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재료/품질																			
수량/규모/크기																			
현재 용도/기능																			
소유자 (단체)	성명 (기관) 주소																		
관리자 (단체)	성명 (기관) 주소																		

현행	개정안								
	(3쪽) 5. 사진자료 <table border="1" data-bbox="1126 391 2045 1377"> <tr> <td data-bbox="1126 391 1588 639"></td><td data-bbox="1588 391 2045 639"></td></tr> <tr> <td data-bbox="1126 639 1588 888"></td><td data-bbox="1588 639 2045 888"></td></tr> <tr> <td data-bbox="1126 888 1588 1137"></td><td data-bbox="1588 888 2045 1137"></td></tr> <tr> <td data-bbox="1126 1137 1588 1377"></td><td data-bbox="1588 1137 2045 1377"></td></tr> </table>								

현행	개정안
	(4쪽) 6. 위치도,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7. 향토유산 보존(정비)·활용 계획 8. 그 밖의 참고자료(문헌, 과학적 분석 자료 등)

현행	개정안
	(5쪽) 향토유산 취득 경위서 ☐ 유산명 : ☐ 보관장소 : ☐ 소유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취득경위 : 본인은 위 향토유산 취득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현행	개정안
	(6쪽) <취득경위 증명자료>* 작성요령 참고

현행	개정안
	(7쪽)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 ☐ 향토유산명 : ☐ 수량 : ☐ 소재지 : ☐ 소유자 ☐ 주소 : ☐ 성명 : ☐ 연락처 : 위 향토유산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현행	개정안
	(8쪽) 〈작성요령〉 • 형식: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 • 향토유산 개요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생략, 목차 순서 변경 가능 •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별도 제출 • 향토유산 취득경위서 작성 시, 명확한 증명자료 제출 ① 은사로부터 수령한 경우, 신청본이 은사스님이 계셨던 사찰이나 조계종 등 종단의 재산인지 여부 ※ 사찰재산인 경우, 상세 이동 연혁 ② 경매로 구입한 경우, 유물의 원 소장처와 원소장자 자료 제출 ☞ 미제출의 경우, 향토유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신청본이 현 유산 소재지와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위와 연혁 제출. 예) 사찰 봉안·소장 자료: 사적기, 사진, 그 밖의 문헌자료 등 봉안·소장 이력 (불경: 사찰에서 승려 교육이나 강경 자료로 활용한 이력, 불화: 소유 사찰에 설치되어 왔거나 사찰 행사시 사용 한 이력) ④ 신청자가 대상 유산의 원소유자·소유집단과 다르거나 원 소유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양도확인서 등 소장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와 도난 여부 관련 자료 예) 특정 문중에서 유래한 유물을 그 문중을 대표한다고 볼 수 어려운 사람이 지정 신청할 경우 해당 문중의 인지 여부 등 • 소유주가 문중인 경우, 문중 회의록 등 향토유산 지정을 동의하는 자료 제출 〈참고사항〉 ◆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등 안내 1. 향토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2. 향토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3.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5. 향토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등 6. 향토유산 보존 정비 활용계획(안) 7.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8. 유물취득 경위서(유형문화유산) 및 증명자료 9.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유형문화유산일 경우 제2호 및 제5호 제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개정·공포되어 2024. 5. 17.에 일괄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통하여 국가유산체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5).
- 나. '만 나이' 시행에 따른 정비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 9).
- 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 및 별표 10).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법무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법무담당관 법제지원팀(031-8075-2303)

- 팩 스 : 031-8075-4906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정부조직법”을 각각 “「정부조직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 고양시 조례 중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령 및 조문을 별표 10과 같이 정비한다.

별표 5의 제목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6조 관련)”을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6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40란 다음에 41란 및 4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복지정책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
42	주차교통과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6조제12호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

별표 9의 29란 다음에 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여성가족과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제5호	만 18세	18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	-------	---------------------	------------	-------	-----	-------------------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정된 고양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행주산성 부설주차장란의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 조례」”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유산 관리 조례」”로 한다.

소 관 부 서		법무담당관
입 안 자	부서장(직위) 성 명	법무담당관 고 미 정
	팀 장(직위) 성 명	법제지원팀장 강 미 정
	담당자 성명 · 전화	오 규 은 (031-8075-2303)

[별표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 내역(제11조 관련)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도시디자인 담당관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제5호 정보매체란 나목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	기획정책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제11조제2항제5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주민자치과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1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5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6	회계과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7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5호	「문화재보호법」 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8	세정과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목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9	환경정책과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0			제5조제1항 단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1	문화예술과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명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2	문화예술과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3			제2조제1호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재 중 국가무형문화재나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로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국가무형유산이나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4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5			제3조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6			제4조제2항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7			제4조제3항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8	문화예술과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목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9			제5조제1항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0			제5조제2항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1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2			제6조제1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3			제6조제2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4			제6조제3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5			제7조 제목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6	문화예술과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본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7			제8조 제목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8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심의위원회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9			제8조제1항제1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0			제8조제1항제2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1			제8조제1항제4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2			제8조제1항제5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3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34	문화예술과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5			제12조제1항제3호	문화재로	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6			제13조제1항제2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7	관광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제명	행주산성문화재	행주산성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8			제1조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39	관광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위원회, 중요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위원회, 중요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0			제6조 제목	문화재	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1			제6조제1항	문화재	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2	재난대응 담당관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제4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3	토지정보과	고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4	미래산업과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5	도시정비과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6조(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u> 고양시 조례의 본문, 별표 중 <u>정부조직법</u>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상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그 내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u><신 설></u>	<u>제6조(「정부조직법」 -----</u> <u>-----) ----- 「정</u> <u>부조직법」 -----</u> <u>-----</u> <u>-----</u> <u>-----</u> <u>-----</u>. <u>제11조(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u> <u>고양시 조례 중 국가유산체제 전환에</u> <u>따라 변경된 인용 법령 및 조문을 별</u> <u>표 10과 같이 정비한다.</u>

현행							개정안						
[별표 5]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6조 관련)							[별표 5]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6조 관련)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1~40		(생략)					1~40		(현행과 같음)				
		<신설>					41	복지정책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
		<신설>					42	주차교통과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6조제12호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
[별표 9]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등에 따른 만 나이 정비 내역(제10조 관련)							[별표 9]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등에 따른 만 나이 정비 내역(제10조 관련)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29		(생략)					1~29		(현행과 같음)				
		<신설>					30	여성가족과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제5호	만 18세	18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현행	개정안																																																					
<u><신 설></u>	[별표 10] 국가유산제체 전환에 따른 정비 내역(제11조 관련) <table><tr><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해당조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tr><td>1</td><td>도시디자인 담당관</td><td>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td><td>[별표] 제5호 정보매체란 나목</td><td>문화재</td><td>국가유산</td><td>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td></tr><tr><td>2</td><td rowspan="2">기획정책관</td><td rowspan="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td><td>제11조제2항 제3호</td><td>문화재</td><td>국가유산</td><td>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td></tr><tr><td>3</td><td>제11조제2항 제5호</td><td>문화재</td><td>국가유산</td><td>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td></tr><tr><td>4</td><td rowspan="2">주민자치과</td><td>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td><td>제4조제3항 제11호</td><td>「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td><td>「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td><td>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td></tr><tr><td>5</td><td>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td><td>제9조제3항</td><td>문화재</td><td>국가유산</td><td>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td></tr><tr><td>6</td><td>회계과</td><td>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td><td>제2조제1호</td><td>문화재</td><td>국가유산</td><td>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td></tr><tr><td>7</td><td>소상공인 지원과</td><td>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td><td>제7조제1항 제5호</td><td>「문화재보호 법」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td><td>「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td><td>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td></tr></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도시디자인 담당관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제5호 정보매체란 나목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	기획정책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1조제2항 제3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제11조제2항 제5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주민자치과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제1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5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6	회계과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7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제5호	「문화재보호 법」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도시디자인 담당관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제5호 정보매체란 나목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	기획정책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1조제2항 제3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제11조제2항 제5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주민자치과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제1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5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6	회계과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7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제5호	「문화재보호 법」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현행		개정안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8	세정과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목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9	환경정책과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0			제5조제1항 단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1	문화예술과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명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현행	개정안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2	문화예술과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3			제2조제1호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재 중 국가무형문화재나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로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국가무형유산이나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4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5			제3조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6			제4조제2항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7			제4조제3항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현행		개정안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8	문화예술과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목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9			제5조제1항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0			제5조제2항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1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2			제6조제1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3			제6조제2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4			제6조제3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5			제7조 제목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현행		개정안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6	문화예술과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본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7			제8조 제목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8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심의위원회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심의위원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9			제8조제1항 제1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0			제8조제1항 제2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1			제8조제1항 제4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2			제8조제1항 제5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3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제1호	문화재	국가유산

현행	행	개 정 안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34	문화예술과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5			제12조제1항 제3호	문화재로	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6			제13조제1항 제2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7	관광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제명	행주산성문화재	행주산성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8			제1조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현행	행	개 정 안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39	관광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위원회, 중요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위원회, 중요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0			제6조 제목	문화재	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1			제6조제1항	문화재	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2	재난대응 담당관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 제4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3	토지정보과	고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4	미래산업과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제4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5	도시정비과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현행	개정안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단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u>국가보훈처장</u> 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1. ----- ----- <u>국가보훈부장관</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생략)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현행과 같음)														
1.~11. (생략)	1.~11. (현행과 같음)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u>국가보훈처장</u> 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자동차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12. ----- ----- ----- <u>국가보훈부장관</u> ----- ----- -----.														
13.~16. (생략)	13.~16. (현행과 같음)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수강료) ① (생략)	제8조(수강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출산과 입양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u>만 18세</u> 이하인 가정의 부모	5. ----- ----- <u>18세</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별표]														
5. 공공매체 및 용품	5. 공공매체 및 용품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th>세부항목</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정보매체</td><td>가. (생략)</td></tr> <tr> <td>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 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u>문화재</u> 안내 등</td></tr> <tr> <td>다.~라. (생략)</td></tr> <tr> <td></td></tr> </tbody> </table>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	가. (생략)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 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u>문화재</u> 안내 등	다.~라.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th>세부항목</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정보매체</td><td>가. (현행과 같음)</td></tr> <tr> <td>나. ----- -----<u>국가유산</u>----- -----</td></tr> <tr> <td>다.~라. (현행과 같음)</td></tr> <tr> <td></td></tr> </tbody> </table>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	가. (현행과 같음)	나. ----- ----- <u>국가유산</u> ----- -----	다.~라. (현행과 같음)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	가. (생략)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 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u>문화재</u> 안내 등														
	다.~라. (생략)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	가. (현행과 같음)														
	나. ----- ----- <u>국가유산</u> ----- -----														
	다.~라. (현행과 같음)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1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생 략)

1.~2. (생 략)

3.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행주산성 유적지 및 문화재 공개·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6. (생 략)

제11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산-----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산-----

6. (현행과 같음)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생 략)

③ (생 략)

1.~10. (생 략)

11.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13. (생 략)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12.~13. (현행과 같음)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 업무 부서장 및 문화재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⑤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

-----.

④~⑤ (현행과 같음)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생 략)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그 밖에 명칭에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국가유산-----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6. (생 략)

-----.
2.~6. (현행과 같음)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명장의 선정 등) ① (생 략)
1.~4. (생 략)
5.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④ (생 략)

제7조(명장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
②~④ (현행과 같음)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제4조(국가유산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생 략)
②~④ (생 략)

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1.~5.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5조(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

제5조(출입제한) ① -----

-----, 「국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8. (생략)
②~③ (생략)

「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 1.~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관할하는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재 중 국가무형문화재나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유자”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사람 및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나.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보유자의 활동 지원) ① (생략)

- ②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해 보유자가 지역주민 및 각 급 학교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무형유산을-----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국가무형유산이나 시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으로-----.
2. -----
-----무형유산을-----
-----.

가.~나.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
-----무형유산-----
-----.

제4조(보유자의 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무형유산-----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등)

① 보유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시장에게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등)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등
2. 전승지원금 등 무형문화재 전승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③ -----무형유산-----

--.

제5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등) ① -

-----무형유산-----
-----.

② -----
-----무형유산-----

-.

제6조(지원 등) -----무형유산-----

-.

1. 무형유산-----

2. -----무형유산-----

3. -----무형유산-----

--

제7조(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

무형유산-----

-----.

제8조(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① -----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

1. 무형문화재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략)
 4.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추천
 5.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② (생략)

1. 무형유산-----

 2. 무형유산-----

 3. (현행과 같음)
 4. 무형유산-----
 5. -----무형유산-----

- 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①~② (생략)

- ③ (생략)
1. 박물관·문화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3. (생략)
 - ④~⑤ (생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1. -----국가유산-----

 - 2.~3.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건축물 등”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근·현대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은-----.

제12조(상징건축물 등의 지정) ① (생략)

- 1.~2. (생략)
 3. 보존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원형 훼손 등이 우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 ②~⑤ (생략)

제12조(상징건축물 등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1.~2. (현행과 같음)
 3. -----문화유산으로-----

- ②~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상징건축물 등의 해제) ① (생략)

제13조(상징건축물 등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문화재보호법」,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
- 3.~4. (생 략)
- ② (생 략)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으로-----

- 3.~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행주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사적지”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분류된 중요문화재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3. (생 략)

제6조(문화재 활용 등) ① 시장은 사적지를 보호하고 행주산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생 략)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유산 관리 조례

제1조(목적)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위원회-----
-----중요문화유산-----
-----.
- 2.~3. (현행과 같음)

제6조(문화유산 활용 등) ① -----

-----문화유산-----
-----.

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1조(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1.~3. (생 략)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 붕괴
5.~8. (생 략)

제41조(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국가유산-----
5.~8. (현행과 같음)

「고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생 략)

- 1.~4. (생 략)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생 략)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현행과 같음)

- 1.~4. (현행과 같음)
5. -----

국가유산-----
6. (현행과 같음)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생 략)

- 1.~3. (생 략)
4. 문화재 · 사적지 등의 안전감시
- 5.~12. (생 략)
- ② (생 략)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현행과 같음)

- 1.~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
- 5.~1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생 략)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 · 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생 략)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현행과 같음)

1. -----국가유산-----

-----.
2. (현행과 같음)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모범형·고급형·대형 택시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운송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모범형 또는 조례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단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및 별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차교통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 고양시청 제2별관
- 전 화 :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031-8075-2960)
- 팩 스 : 031-8075-492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차교통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주차교통과장 김 두 한
	팀 장 성 명	택시운영팀장 최 민 형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성 균 031-8075-296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6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 <u>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u> <u>③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의 신청절차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별표]</u> <u>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6조제2항)</u> 1. 개인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가. 대상자 :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가·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인가 시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인가 시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인가 시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1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가. 대상자 : 고양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가·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인가 시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인가 시 기준 과거 1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사업자 (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받은 처분은 제외) 4)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개인택시운송사업 :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가. 대상자 :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u><삭 제></u>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인가·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2) 인가 시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3) 인가 시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4) 인가 시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5)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가. 대상자 : 고양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가·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2) 인가 시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3) 인가 시 기준 과거 1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사업자 (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받은 처분은 제외)
- 4)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 개인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가. 대상자 :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인가·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2) 인가 시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3) 인가 시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4) 인가 시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5)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가. 대상자 : 고양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가·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2) 인가 시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3) 인가 시 기준 과거 1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사업자 (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받은 처분은 제외)
- 4)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4. 기타 사업별 면허 조건

가. 대형택시

- 1) 대형택시는 고양시 총 택시면허대수의 5% 이내에서 인가합니다.
- 2) 대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대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는 양도가능 합니다.)
- 3) 대형택시는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4)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5)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 6) 완전 예약 및 호출방식 운영, 배회·상주영업 금지(대형승합택시에 한정함)합니다.
- 7) 외관은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모범형택시

- 1) 모범형택시는 고양시 총 택시면허대수의 5% 이내에서 인가합니다.
- 2) 모범형택시 면허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모범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는 양도가능 합니다.) 3) 모범형택시는 콜서비스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 발행기·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6)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7) 외관은 검정색, 황금띠(모범형택시 표기)로 합니다.	
다. 고급형택시 1) 고급형택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합니다. 2) 완전 예약제로 운영, 택시 승차장 대기금지, 배회영업 금지합니다. 3) 고급형택시 면허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고급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는 양도가능 합니다.) 4) 고급형택시는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5)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7) 외관은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 나. 상위법 시행규칙 조문이 신설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안 제41조의4).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정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15번길 22, 제3별관 2층(주교동)
- 전 화 : 도시정비과 소규모주택정비팀(031-8075-3438)
- 팩 스 : 031-8075-493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20퍼센트로”를 “100분의 20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9조제7항”을 “법 제49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9조제9항”을 “법 제49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정비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시정비과장 표 명 섭
	팀 장 성 명	소규모주택정비팀장 박 정 길
	담 당 자 성명·전화	홍 지 애 031-8075-343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u>20퍼센트로</u>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9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① ----- -----100분의 20으로-----.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9조의2제3항----- -----. ④ 법 제49조의2제5항----- -----. 제41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개정·공포되어 2024. 5. 17.에 일괄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통하여 국가유산체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을 표시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어, 만 나이로 표현을 통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4).
- 나. ‘만 나이’ 시행에 따른 정비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및 별표 6).
- 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 및 별표 7).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법무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법무담당관 법제지원팀(031-8075-2303)

- 팩 스 : 031-8075-490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정부조직법”을 각각 “「정부조직법」”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등에 따른 만 나이 정비) 고양시 규칙 중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등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을 위해 별표 6과 같이 정비한다.

제8조(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 고양시 규칙 중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령 및 조문을 별표 7과 같이 정비한다.

별표 4의 제목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5조 관련)”을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5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22란 다음에 2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인적자원과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처발행	국가보훈부 발행	「정부조직법」 개정
----	-------	-----------------	----------	---------	----------	------------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

칙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법무담당관
입 안 자	부서장 성 명	법무담당관 고 미 정
	팀 장 성 명	법제지원팀장 강 미 정
	담당자 성명 · 전화	오 규 은 (031-8075-2303)

[별표 6]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등에 따른 만 나이 정비 내역(제7조 관련)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기획정책관	고양시 높빛공직자 포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출생년도, 만○세	출생연도, ○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	여성가족과	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규칙	별표	만 65세	65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3	덕양구도서관과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단서	만 14세	14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4			별지 제2호서식	만 14세	14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별표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 내역(제8조 관련)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기획정책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9] 문화예술과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2호, 제44호, 제45호 및 제51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43호	문화재 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50호	유·무형 문화재	유형·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52호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54호 및 제55호	도지정 문화재	시도지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56호	향토문화재	향토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61호	문화재지킴이	국가유산지킴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63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64호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	기획정책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9] 관광과란 제31호 및 제32호	행주산성 문화재	행주산성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별표 9] 스마트시티과란 제15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별표 12] 덕양공원관리과 제1호	문화재시설	국가유산시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5			[별표 12] 일산공원관리과 제1호	문화재시설	국가유산시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6	기획정책관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1] 문화예술과 제26호	문화재보수, 문화재, 문화재 보수공사, 문화재 보수공사	국가유산 보수, 국가유산, 국가유산 보수 공사, 국가유산 보수 공사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7			[별표 1] 문화예술과 제27호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보호구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8	기획정책관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1] 문화예술과 제28호	문화재현상 변경, 문화재현상변경, 문화재현상변경, 문화재현상변경, 문화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국가유산 현상변경, 국가유산 현상변경, 국가유산 현상변경, 국가유산 현상변경, 국가유산,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9			[별표 1] 문화예술과 제29호	문화재 매매업, 문화재 매매업, 문화재 매매업, 문화재 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0			[별표 1] 문화예술과 제31호	유·무형 문화재, 문화재	유형·무형유산, 유형·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1			[별표 1] 문화예술과 제32호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매장유산, 매장유산, 매장유산, 매장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2			[별표 1] 문화예술과 제33호	도지정문화재, 지정 문화재	시도지정유산, 지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3			[별표 1] 문화예술과 제34호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유산, 문화유산위원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4	기획정책관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1] 문화예술과 제35호	도지정 문화재	시도지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5			[별표 1] 문화예술과 제36호	향토문화재, 문화재, 향토문화재 위원회, 향토문화재	향토유산, 향토유산, 향토유산 위원회, 향토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6			[별표 1] 문화예술과 제40호	문화재지킴이, 문화재지킴이	국가유산지킴이, 국가유산지킴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7			[별표 1] 문화예술과 제42호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8			[별표 1] 관광과 제15호	행주산성 문화재공개, 문화재, 문화재	행주산성문화유산 공개, 문화유산, 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9			[별표 1] 관광과 제16호	행주산성 문화재, 행주산성 문화재, 문화재시설	행주산성문화유산, 행주산성문화유산, 문화유산시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0	인적자원과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2] 학예일반란	문화재 관리학	문화유산관리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1			[별표 7] 제2호가목 시설란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고양시 규칙의 본문, 별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 설> <신 설>	제5조(「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 -----. 제7조(「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등에 따른 만 나이 정비) 고양시 규칙 중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등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을 위해 별표 6과 같이 정비한다. 제8조(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 고양시 규칙 중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령 및 조문을 별표 7과 같이 정비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4]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5조 관련)							[별표 4]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5조 관련)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1~22		(생략)					1~22		(생략)				
		<신설>					23	인적자원과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처발행	국가보훈부 발행	「정부조직법」 개정
<신설>							[별표 6]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등에 따른 만 나이 정비 내역(제7조 관련)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기획정책관	고양시 높빛공직자 포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출생년도, 만○세	출생연도, ○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1	기획정책관	고양시 높빛공직자 포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출생년도, 만○세	출생연도, ○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	여성가족과	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	만 65세	65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	여성가족과	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	만 65세	65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3	덕양구 도서관과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단서	만 14세	14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3	덕양구 도서관과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단서	만 14세	14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4			별지 제2호서식	만 14세	14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4			별지 제2호서식	만 14세	14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현행	개정안						
<u><신 설></u>	[별표 7]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기획정책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9] 문화예술과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2호, 제44호, 제45호 및 제51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43호	문화재 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50호	유·무형 문화재	유형·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52호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54호 및 제55호	도지정 문화재	시도지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56호	향토문화재	향토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61호	문화재지킴이	국가유산지킴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63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64호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			[별표 9] 관광과란 제31호 및 제32호	행주산성 문화재	행주산성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별표 9] 스마트시티과란 제15호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별표 12] 덕양공원관리과 제1호	문화재시설	국가유산시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현행		개정안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5			[별표 12] 일산공원관리과 제1호	문화재시설	국가유산시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6	기획정책관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1] 문화예술과 제26호	문화재보수, 문화재, 문화재 보수공사, 문화재 보수공사	국가유산 보수, 국가유산, 국가유산 보수 공사, 국가유산 보수 공사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7			[별표 1] 문화예술과 제27호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보호구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8			[별표 1] 문화예술과 제28호	문화재현상 변경, 문화재현상변경, 문화재현상변경, 문화재현상변경, 문화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국가유산 현상변경, 국가유산 현상변경, 국가유산 현상변경, 국가유산 현상변경, 국가유산,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9			[별표 1] 문화예술과 제29호	문화재 매매업, 문화재 매매업, 문화재 매매업, 문화재 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0			[별표 1] 문화예술과 제31호	유·무형 문화재, 문화재	유형·무형유산, 유형·무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현행	개정안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1			[별표 1] 문화예술과 제32호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매장유산, 매장유산, 매장유산, 매장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2			[별표 1] 문화예술과 제33호	도지정문화재, 지정 문화재	시도지정유산, 지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3			[별표 1] 문화예술과 제34호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유산, 문화유산위원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4	기획정책관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1] 문화예술과 제35호	도지정 문화재	시도지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5			[별표 1] 문화예술과 제36호	향토문화재, 문화재, 향토문화재 위원회, 향토문화재	향토유산, 향토유산, 향토유산 위원회, 향토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6			[별표 1] 문화예술과 제40호	문화재지킴이, 문화재지킴이	국가유산지킴이, 국가유산지킴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7			[별표 1] 문화예술과 제42호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8			[별표 1] 관광과 제15호	행주산성 문화재공개, 문화재, 문화재	행주산성 문화유산 공개, 문화유산, 문화유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9			[별표 1] 관광과 제16호	행주산성 문화재, 행주산성 문화재, 문화재시설	행주산성문화유산, 행주산성문화유산, 문화유산시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현행		개정안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0	인적자원과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2] 학예일반란	문화재 관리학	문화유산관리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1			[별표 7] 제2호가목 시설란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등 록 요 령		임 용 후 보 자 등 록 요 령																										
각급 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각급 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구비서류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6) ----- -----국가보훈부 발행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고양시 높빛공직자 포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u>고양시 높빛공직자 대상자 공적조서</u>		<u>고양시 높빛공직자 대상자 공적조서</u>																										
(○○ 분야)		(○○ 분야)																										
○○○국 ○○○과장 홍길동 (인)		○○○국 ○○○과장 홍길동 (인)																										
1. 인적사항		1. 인적사항																										
<table><tr><th>사진 (JPG 파일)</th><th>소 속</th><th>직 급</th><th>성 명</th><th>출생년도</th><th>재직기간</th></tr><tr><td></td><td></td><td></td><td></td><td>○○년 (만○세)</td><td>○년○월</td></tr></table>		사진 (JPG 파일)	소 속	직 급	성 명	출생년도	재직기간					○○년 (만○세)	○년○월	<table><tr><th>사진 (JPG 파일)</th><th>소 속</th><th>직 급</th><th>성 명</th><th>출생년도</th><th>재직기간</th></tr><tr><td></td><td></td><td></td><td></td><td>○○년 (○세)</td><td>○년○월</td></tr></table>			사진 (JPG 파일)	소 속	직 급	성 명	출생년도	재직기간					○○년 (○세)	○년○월
사진 (JPG 파일)	소 속	직 급	성 명	출생년도	재직기간																							
				○○년 (만○세)	○년○월																							
사진 (JPG 파일)	소 속	직 급	성 명	출생년도	재직기간																							
				○○년 (○세)	○년○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		[별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table><tr><th rowspan="2">감경대상 위반행위</th><th colspan="3">감경비율</th></tr><tr><th>50%</th><th>30%</th><th>20%</th></tr></table>		감경대상 위반행위	감경비율			50%	30%	20%	<table><tr><th rowspan="2">감경대상 위반행위</th><th colspan="3">감경비율</th></tr><tr><th>50%</th><th>30%</th><th>20%</th></tr></table>			감경대상 위반행위	감경비율			50%	30%	20%										
감경대상 위반행위	감경비율																											
	50%	30%	20%																									
감경대상 위반행위	감경비율																											
	50%	30%	20%																									
1~10. (생 략)		1~10. (현행과 같음)																										
11. 공통사항		11. 공통사항																										
가.~사. (생 략)		가.~사. (현행과 같음)																										
아. 만65세 이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30% 감경		아. 65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회원가입)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1.~4. (생 략)

②~④ (생 략)

[별지 제2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회원종류 :√ 표시)

☐ 관내회원	☐ 책임음회원
(생 략)	
신청인 : (서명)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제5조(회원가입) ① -----

-----14세-----
-----.

1.~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회원종류 :√ 표시)

☐ 관내회원	☐ 책임음회원
(현행과 같음)	
신청인 : (서명)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9]

시 본청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1.~36. (생 략)
		37. 문화재 보존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8.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9. 문화재의 발굴 및 복원(복설) 등에 관한 사항
		40. 문화재 및 급경사지 재난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1. (생 략)
		42.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변경), 협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43. 문화재 매매업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4. 문화재 수리업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5. 문화재안내판 설치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46.~49. (생 략)
		50. 유·무형 문화재 지정·해제
		51.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추진
		5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53. (생 략)
		54.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 보존, 관리, 정비, 활용 방안 수립
		55.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수립
		56. 고양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심의

[별표 9]

시 본청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1.~36. (현행과 같음)
		37. 국가유산-----
		38. 국가유산-----
		39. 국가유산-----
		40. 국가유산-----
		41. (현행과 같음)
		42. 국가유산-----
		43. 문화유산매매업-----
		44. 국가유산-----
		45. 국가유산-----
		46.~49. (현행과 같음)
		50. 유형·무형유산-----
		51. 국가유산-----
		52. 매장유산-----
		53. (현행과 같음)
		54. -----시도지정유산-----
		55. -----시도지정유산-----
		56. -----향토유산-----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57.~60. (생 략) 61. <u>문화재지킴이</u> 사업 62. (생 략) 63.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 64. 국가 및 <u>시도지정문화재</u> 탁본 및 촬영 허가 65. (생 략)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교육문화국	관광과	1.~30. (생 략) 31. <u>행주산성 문화재</u> 공개에 관한 사항 32. (생 략) 32. <u>행주산성 문화재</u> 보호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3.~36. (생 략)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주택 정책실	스마트시티과	1.~14. (생 략) 15. <u>문화재</u> 관리 CCTV 관리 및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16.~18. (생 략)

[별표 12]

사업소별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사업소	부서명	사 무 분 장
푸른도시 사업소	덕양공원 관리과	1. 공원 운영 및 관리(도시계획시설 결정 상 “공원” 운영 및 관리. 다만, 야구장, 축구 장 등 체육시설, <u>문화재</u> 시설, 농업체험시 설, 방재시설, 반려동물공원 등 타부서 사무분장 및 조례상 관리시설 제외) 2.~15. (생 략)

사업소	부서명	사 무 분 장
푸른도시 사업소	일산공원 관리과	1. 공원 운영 및 관리(도시계획시설 결정 상 “공원” 운영 및 관리. 다만, 야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 <u>문화재</u> 시설, 농업체 험시설, 방재시설, 반려동물공원 등 타부 서 사무분장 및 조례상 관리시설 제외) 2.~18. (생 략)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1]

시 본청의 결재 및 전결처리 사무(제4조 관련)

[문화예술과]

단 위 사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과장	순국장		제1 부시장
		실무	팀장				
1-25. (생 략)							
26. 문화재보수 공사	1. 문화재 보수 계획 수립	기안		○			
	2. 문화재 보수공사 감독	기안	○				
	3. 문화재 보수공사 국도비 신청 및 정산	기안		○			
27. 문화재 전통사찰	1. 문화재 위탁관리지정	기안		○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57.~60. (현행과 같음) 61. <u>국가유산지킴이</u> ----- 62. (현행과 같음) 63. <u>무형유산</u> ----- 64. ----- <u>시도지정유산</u> ----- 65. (현행과 같음)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교육문화국	관광과	1.~30. (현행과 같음) 31. <u>행주산성문화유산</u> ----- 32. (현행과 같음) 32. <u>행주산성문화유산</u> ----- 33.~36. (현행과 같음)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주택 정책실	스마트시티과	1.~14. (현행과 같음) 15. <u>국가유산</u> ----- ----- ----- 16.~18. (현행과 같음)

[별표 12]

사업소별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사업소	부서명	사 무 분 장
푸른도시 사업소	덕양공원 관리과	1. ----- ----- ----- <u>국가유산시설</u> ----- ----- 2.~15. (현행과 같음)

사업소	부서명	사 무 분 장
푸른도시 사업소	일산공원 관리과	1. ----- ----- ----- <u>국가유산시설</u> ----- ----- 2.~18. (현행과 같음)

[별표 1]

시 본청의 결재 및 전결처리 사무(제4조 관련)

[문화예술과]

단 위 사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과장	순국장	제1 부시장	
		실무	팀장				
1-25. (현행과 같음)							
26. <u>국가유산 보수</u>	1. <u>국가유산</u> -----	기안		○			
	2. <u>국가유산 보수 공사</u>	기안	○				
	3. <u>국가유산 보수 공사</u>	기안		○			
27. <u>국가유산</u> -----	1. <u>국가유산</u> -----	기안		○			

단 위 사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과장	순국장	제1 부사장	
		실무	팀장				
보존관리	및 계약						
	2. <u>문화재</u> 위탁관리비 지급	기안	○				
	3. <u>문화재</u> 지도·점검	기안		○			
	4. <u>문화재보호구역</u> 토지 매입	기안		○			
	5. (생 략)	기안		○			
28. <u>문화재현상 변경</u> 허가	1. <u>문화재현상변경</u> 허가	기안		○			
	2. <u>문화재현상변경</u> 허가 자랑 변경	기안		○			
	3. <u>문화재현상변경</u> 허가 협의	기안		○			
	4. <u>문화재</u> 현상변경 허가 취소불가반려	기안		○			
	5. <u>문화재</u> 현상변경허가 취하	기안	○				
29. <u>문화재 매매</u> 관리	1. <u>문화재 매매</u> 허가	기안		○			
	2. <u>문화재 매매</u> 폐업 신고	기안		○			
	3. <u>문화재 매매</u> 검인 신고	기안		○			
30. (생 략)							
31. <u>유무형 문화재</u> 지정 해제	1. 신규 대상 <u>문화재</u> 지정 계획 수립 및 조사	기안			○		
	2-5. (생 략)						
32. <u>매장문화재</u> 지표 조사 및 발굴	1. <u>매장문화재</u> 조사 시행 여부 검토 및 전문가 검토 회의 추진	기안		○			
	2. <u>매장문화재</u> 조사 사업계획 서 및 토지임대조서 확인	기안		○			
	3. <u>매장문화재</u> 조사 착수 및 완료 신고	기안		○			
	4. (생 략)	기안		○			
	5. <u>매장문화재</u> 발견 신고에 대한 <u>문화재청</u> 협의	기안		○			
33. 국가지정·도지 정문화재 보존 관리, 정비, 활 용 방안 수립	1. 지정 <u>문화재</u> 정책 계획 수립	기안			○		
	2-5. (생 략)						
34.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건축행위 허용 기준(안) 수립	1-3. (생 략)						
	4. 지역 주민 의견 수립 및 <u>문화재위원회</u> 상정	기안		○			
	5. (생 략)						
35. 국가지정·도지 정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 기 준(안) 수립	1-5. (생 략)						
36. 고양시 <u>향토문화재</u> 지정 및 심의	1. 신규 대상 <u>문화재</u> 지정 계획 수립 및 조사	기안			○		
	2-3. (생 략)						
	4. <u>향토문화재 위원회</u> 구성 및 운영	기안				○	
	5. 고양시 <u>향토문화재</u> 지정 심의	기안					○
	6. (생 략)						
37.-39. (생 략)							
40. <u>문화재지킴이</u> 사업	1. <u>문화재지킴이</u> 사업						
41. (생 략)							
42. 국가 및 시도지 정문화재 탁본 및 촬영 허가	1.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 재 탁본 및 촬영 허가	기안		○			

단 위 사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과장	순국장	제1 부사장	
		실무	팀장				
-----	-----						
	2. <u>국가유산</u> -----	기안	○				
	3. <u>국가유산</u> -----	기안		○			
	4. <u>국가유산보호구역</u> -----	기안		○			
	5. (현행과 같음)	기안		○			
28. <u>국가유산 현상변경</u> -----	1. <u>국가유산</u> 현상변경-----	기안		○			
	2. <u>국가유산</u> 현상변경-----	기안		○			
	3. <u>국가유산</u> 현상변경-----	기안		○			
	4. <u>국가유산</u> -----	기안		○			
	5. <u>국가유산</u> 현상변경 허가-----	기안	○				
29. <u>문화유산매매</u> -----	1. <u>문화유산매매</u> -----	기안		○			
	2. <u>문화유산매매</u> -----	기안		○			
	3. <u>문화유산매매</u> -----	기안		○			
30. (현행과 같음)							
31. <u>유형·무형유산</u> -----	1. ----- <u>유형·무형유산</u> -----	기안			○		
	2-5. (현행과 같음)						
32. <u>매장유산</u> -----	1. <u>매장유산</u> -----	기안		○			
	2. <u>매장유산</u> -----	기안		○			
	3. <u>매장유산</u> -----	기안		○			
	4. (현행과 같음)	기안		○			
	5. <u>매장유산</u> -----	기안		○			
33. ----- <u>시도지 정유산</u> -----	1. <u>지정유산</u> -----	기안			○		
	2-5. (현행과 같음)						
34. <u>국가지정유산</u> -----	1-3. (현행과 같음)						
	4. ----- <u>문화유산위원회</u> -----	기안		○			
	5. (현행과 같음)						
35. ----- <u>시도지 정 유산</u> -----	1-5. (현행과 같음)						
36. ----- <u>향토유산</u> -----	1. ----- <u>향토유산</u> -----	기안			○		
	2-3. (현행과 같음)						
	4. <u>향토유산</u> 위원회-----	기안			○		
	5. ----- <u>향토유산</u> -----	기안			○		
	6. (현행과 같음)						
37.-39. (현행과 같음)							
40. <u>국가유산지킴이</u> -----	1. <u>국가유산지킴이</u> -----	기안		○			
41. (현행과 같음)							
42. ----- <u>시도지 정유산</u> -----	1. ----- <u>시도지정유산</u> -----	기안		○			

단 위 사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과장	소속장	제1 부사장	
		실무	팀장				
43~45 (생략)							

[관광과]

단 위 사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과장	실국장	제1 부시장	
		실무	팀장				
1~14. (생 략)							
15. <u>행주산성 문화재</u> <u>공개</u> 관련	1. 문화재 공개 및 비공 개 관련 사항	기안		○			
	2. 문화재 공개시간 단축 연장	기안		○			
16. <u>행주산성 문화재</u> <u>보호</u> 에 관한사항	1. <u>행주산성 문화재</u> 시설 및 재산 관리	기안		○			
	2. 경내 <u>문화재시설</u> 유지, 보수	기안		○			
	3~4. (생 략)	기안		○			
17~18. (생 략)							

단 위 사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과장	소속장	제1 부시장	
		실무	팀장				
43~45 (현행과 같음)							

[관광과]

단 위 사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과장	실국장	제1 부시장	
		실무	팀장				
1-14. (현행과 같음)							
15. <u>행주산성문화유산</u> <u>공개</u>	1. <u>문화유산</u> -----	기안		○			
	2. <u>문화유산</u> -----	기안		○			
16. <u>행주산성문화유산</u>	1. <u>행주산성문화유산</u> -----	기안		○			
	2. ----- <u>문화유산시설</u> -----	기안		○			
	3.-4. (현행과 같음)	기안		○			
17.-18. (현행과 같음)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4항·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계급		연구관 . 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술	(생략)
	국악	(생략)
	국어	(생략)
		(생략)

[별표 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생략)				
시 설 조 종	건축사(5)	건축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기술자(보수	기술자(보수	기술자(보수	기술자(보수	기술자(보수	기술자(보수
디 자 인	기술자(12)	기술자(9)	기술자(6)	기술자(3)	기술자(보수	기술자(보수
	기술자(12)	기술자(9)	기술자(6)	기술자(3)	기술자(보수	기술자(보수
(생략)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4항·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계급		연구관 . 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화유산관리학----- ----- ----- ----- ----- ----- -----
	미 술	(현행과 같음)
	국 악	(현행과 같음)
	국 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현행과 같음)				
시 설 조 종	건축사(5)	건축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디 자 인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현행과 같음)						

도시계획시설[광장 48호, 하천 3호, 광장 2호 (자유로 횡단 보도육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3-514(2023. 12. 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3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광장48호, 하천3호, 광장2호 (자유로 횡단 보도육교)]사업에 대하여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3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광장48호, 하천3호, 광장2호) 사업
- 명칭: 고양덕은지구 자유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28층(동자동, 케이디비생명타워)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총면적 : 975㎡(광장: 501㎡, 하천:474㎡)

※ 교통광장 387㎡, 일반광장 114㎡

- 광 장 (교통광장)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결정	48	교통광장	덕은동 579 일원	46,693	경고1995-20 (95.1.27)	
인가	48	교통광장	덕은동 579 일원	387		

- 하 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세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결정	3	하천	국가 하천	덕은동 579	구산동 672	행주 산성	22.35	400~1,000	17,519,173	경고 1998-381 (98.9.23)	
인가	3	하천	국가 하천	덕은동 520-37	덕은동 520-39	덕은동 520-39	-	-	474		

- 광 장 (일반광장)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결정	2	일반광장	덕은동 425-80 일원	441	국고21-1480 (21.12.31)	
인가	2	일반광장	덕은동 425-80 일원	114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 19.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4. 2. 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토지조서 참조” (변경없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라, 바” 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분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34,677	975							
1	덕양구 덕은동	425-32	도	25,127	467	국(국토교통부)						사용
2	덕양구 덕은동	425-40	도	1,776	61	국(국토교통부)						사용
3	덕양구 덕은동	425-70	제	32	11	국(건설부)						사용
4	덕양구 덕은동	425-71	제	730	54	국(건설부)						사용
5	덕양구 덕은동	425-76	제	428	16	국(건설교통부)						사용
6	덕양구 덕은동	425-80	대	287	7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 주시 충의로 22 (충무공동)	1/1				사용
7	덕양구 덕은동	425-113	전	374	1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 주시 충의로 21 (충무공동)	1/1				사용
8	덕양구 덕은동	520-37	천	3,135	28	국(건설부)						사용
9	덕양구 덕은동	520-39	천	1,066	37	국(건설부)						사용
10	덕양구 덕은동	520-44	제	58	20	국(건설부)						사용
11	덕양구 덕은동	520-46	전	709	1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 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1/1				사용
12	덕양구 덕은동	520-47	전	98	1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 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1/1				사용
13	덕양구 덕은동	520-161	제	77	8	국(건설부)						사용
14	덕양구 덕은동	520-185	전	93	22	국(국토교통부)						사용
15	덕양구 덕은동	520-187	전	68	34	국(국토교통부)						사용
16	덕양구 덕은동	520-188	전	471	75	국(국토교통부)						사용
17	덕양구 덕은동	520-189	제	71	20	국(건설부)						사용
18	덕양구 덕은동	520-209	제	77	8	국(건설부)						사용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233-4 등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1.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729-2, 100, 10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233-4 (원당동)	2024-01-19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치한 도로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운길 27-38 (지축동)	2024-01-19	20090710	주요지물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82-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08번길 112-16 (내유동)	2024-01-19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11080m에 위치한 도로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30-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5길 17 (지축동)	2024-01-19	20191101	고유지명 및 유래 등을 고려하여 선정	
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동 82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266번길 105-45 (법곶동)	2024-01-19	20100126	송산로 시점에서 2660m에 위치한 도로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68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영로 214 (오금동)	2024-01-19	20090824	행정구역 명칭 인용	
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6-3, 1586-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1로 6-57 (식사동)	2024-01-19	20110715	식사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24-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91 (지축동)	2024-01-19	2019053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36-56 (신평동)	2024-01-19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17-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1길 8	2024-01-19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에 따른 지번확정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멸실건을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91-1	2024-01-15	건물 신축	2017-02-10	지축동	

공인 폐기 공고

「고양시 공인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9.

고 양 시 장

1. 폐기사유 : 위원회 명칭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 및 업무 변동
2. 폐기일 : 2024. 1. 19.
3.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연번	공인명	규격(cm)	인 영
1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인	2.4×2.4	
2	고양시장인(도로보상전용)	2.1×2.1	
3	일반회계국토해양부소관 고양시분임채권관리관인	2.0×2.0	
4	일반회계국토해양부소관 고양시분임수입징수관인	2.0×2.0	

일반수도사업인가(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열람 공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및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지방상수도【사업명 :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인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4. 01. 19.

고 양 시 장

1. 사업예정지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일산동구 장항동, 백석동, 풍동, 산황동, 식사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2. 일반수도사업인가 내용

- 목 적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및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 급수구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및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 목표연도 : 2030년
- 급수인구 : 95,741명
- 급 수 량 : 14,959㎥/일(일평균), 17,912㎥/일(일최대)
- 공급계통 : 자양취수장 → 일산정수장 → 원당배수지 → 장항급수구역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일반수도사업
- 명 칭 :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수용 : 12,412.9㎡, 점용 : 9,691.4㎡, 사용 : 9,892.4㎡,
- 사업규모
 - 송수관로 : D700mm, L=5.7km
 - 배수관로 : D800mm, L=10.3km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경기도 고양특례시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일반수도사업인가일 ~ 2026. 03.

7.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 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8075-4494)
- 의견제출 : 일반수도사업인가 내용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용지조서 참조

용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	성명 및 명칭	주소	
합계					12,412.9	9,691.4	9,892.4						
1	덕양구 내곡동	109-8	수	214.0		2.9	4.1	환경부					
2	덕양구 내곡동	103-2	임	255.0	59.9			이*승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 106-2				
3	덕양구 내곡동	82-3	도	496.0		0.0	2.5	국토교통부					
4	덕양구 내곡동	504-15	도	775.0		4.2	6.2	국토교통부					
5	덕양구 내곡동	104-13	도	2185.0		131.9	180.5	고양시					
6	덕양구 내곡동	104-2	전	994.0	7.4			오*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71-5				
7	덕양구 내곡동	104-3	전	2200.0	0.3			오*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71-5				
8	덕양구 내곡동	105-1	전	261.0	0.1			김*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879 삼운아파트2-809				
9	덕양구 내곡동	104-5	구	376.0	0.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	덕양구 내곡동	96-10	도	1055.0		56.6	80.8	고양시					
11	덕양구 내곡동	98-5	구	16.0	5.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2	덕양구 내곡동	504-7	도	1451.0		2.5	3.6	국토교통부					
13	덕양구 내곡동	226-7	도	161.0		11.7	16.8	고양시					
14	덕양구 내곡동	226-8	구	74.0	42.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5	덕양구 내곡동	227-4	구	46.0	2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6	덕양구 내곡동	228-2	구	10.0	10.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	덕양구 내곡동	229-7	구	224.0	96.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8	덕양구 내곡동	229-5	도	271.0		3.3	4.7	고양시					
19	덕양구 내곡동	239-3	도	99.0		14.4	20.8	고양시					
20	덕양구 내곡동	239-4	구	139.0	50.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1	덕양구 내곡동	241-7	도	678.0		45.1	64.4	고양시					
22	덕양구 내곡동	504-6	도	990.0		2.2	3.1	국토교통부					
23	덕양구 내곡동	250-4	도	1212.0		27.8	39.8	고양시					
24	덕양구 내곡동	504-5	도	852.0		1.4	1.9	국토교통부					
25	덕양구 내곡동	가지번			0.8								
26	덕양구 내곡동	251-2	구	64.0	21.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7	덕양구 내곡동	168-7	구	82.0		2.6	3.7	농림축산식품부					
28	덕양구 내곡동	168-2	전	1244.0	83.7			장*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81 성저마을 704-303	근자당원	배성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35 옥빛마을1708-404	
29	덕양구 내곡동	168-12	답	1144.0		41.4	54.0	국토교통부					
30	덕양구 내곡동	155-27	도	466.0		8.7	17.4	국토교통부					
31	덕양구 내곡동	168-14	구	181.0		2.0	2.8	국토교통부					
32	덕양구 내곡동	168-1	답	1020.0		23.2	33.1	국토교통부					
33	덕양구 내곡동	256-4	전	20.0		7.9	10.3	국토교통부					
34	덕양구 내곡동	286-14	임	14.0		1.6	2.8	국토교통부					
35	덕양구 내곡동	155-25	도	675.0		97.0	137.5	농림축산식품부					
36	덕양구 내곡동	291	답	338.0	1.2			박*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227-31 (내곡동)	근자당원	지도농협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75(행주지점)	
37	덕양구 내곡동	155-39	도	46.0		4.3	6.1	농림축산식품부					
38	덕양구 내곡동	544-38	도	389.0		0.0	0.0	농림축산식품부					
39	덕양구 내곡동	155-40	도	28.0		2.1	2.6	농림축산식품부					
40	일산동구 산황동	544-5	도	370.0		23.8	29.8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	성명 및 명칭	주소	
41	일산동구 산황동	542-13	전	283.0		22.7	38.1	국토교통부					
42	일산동구 산황동	544-4	구	857.0		2.4	3.5	농림축산식품부					
43	일산동구 산황동	537-13	전	2035.0		70.6	100.8	국토교통부					
44	일산동구 산황동	544-23	도	76.0		9.1	9.8	농림축산식품부					
45	일산동구 산황동	536-1	전	1048.0			1.5	국토교통부					
46	일산동구 산황동	536-18	답	480.9		0.0	1.7	국토교통부					
47	일산동구 산황동	536-2	전	2245.0	7.2			허*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33, 104동 703호	근저당권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48	일산동구 산황동	544-3	구	4297.0		4.2	170.0	농림축산식품부					
49	일산동구 산황동	544-18	도	1383.0		285.9	231.5	농림축산식품부					
50	일산동구 산황동	544-20	구	11.0		0.0	1.4	농림축산식품부					
51	일산동구 산황동	544-24	도	13.0		3.4	3.4	농림축산식품부					
52	일산동구 산황동	544-27	구	6.0		0.0	1.0	농림축산식품부					
53	일산동구 산황동	544-25	도	491.0		113.6	157.3	농림축산식품부					
54	일산동구 산황동	544-17	도	654.0		5.1	11.2	농림축산식품부					
55	일산동구 산황동	529-21	답	1246.0		34.7	49.8	고양시					
56	일산동구 산황동	544-15	구	74.0		1.7	2.5	농림축산식품부					
57	일산동구 산황동	528-11	답	360.0		11.1	15.9	고양시					
58	일산동구 산황동	573-25	구	1601.0		76.3	108.9	고양시					
59	일산동구 산황동	567-9	전	39.0		2.7	3.9	고양시					
60	일산동구 산황동	568-3	전	228.0		22.2	30.9	고양시					
61	일산동구 산황동	571-1	임	183.0		0.0	0.8	고양시					
62	일산동구 산황동	573-22	전	108.0		0.0	0.0	고양시					
63	일산동구 산황동	574	전	245.0	79.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4	일산동구 산황동	553-2	구	512.0		43.7	62.4	고양시					
65	일산동구 산황동	664-3	구	502.0		32.0	45.8	고양시					
66	일산동구 산황동	657-2	구	889.0		61.3	87.2	고양시					
67	일산동구 산황동	665-2	구	93.0		10.4	15.1	고양시					
68	일산동구 산황동	658-2	구	89.0		5.2	7.5	고양시					
69	일산동구 산황동	653-5	구	460.0	113.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0	일산동구 산황동	653-13	구	548.0		51.2	68.8	고양시					
71	일산동구 산황동	744-16	도	21.0		0.4	4.6	농림축산식품부					
72	일산동구 산황동	641-4	구	176.0	9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3	일산동구 산황동	744-15	답	420.0		0.0	0.5	고양시					
74	일산동구 산황동	744-14	답	679.0		0.0	0.7	고양시					
75	일산동구 산황동	577-5	도	93.0		0.0	0.2	농림축산식품부					
76	일산동구 산황동	649-3	구	68.0		13.8	19.8	고양시					
77	일산동구 산황동	647-3	구	97.0		28.1	32.0	고양시					
78	일산동구 산황동	647-2	구	303.0	8.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9	일산동구 산황동	644-2	구	233.0	5.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0	일산동구 산황동	644-4	구	75.0		20.9	24.2	고양시					
81	일산동구 산황동	644-5	구	23.0		7.4	10.5	고양시					
82	일산동구 산황동	643-3	구	55.0		5.9	8.6	고양시					
83	일산동구 산황동	577-9	도	50.0		7.0	8.5	농림축산식품부					
84	일산동구 산황동	743-6	답	47.0		0.1	1.1	경기도					
85	일산동구 산황동	743-10	답	52.0		0.2	0.8	경기도					
86	일산동구 산황동	643-2	구	183.0		5.9	9.2	경기도					
87	일산동구 산황동	815-4	구	9.0		0.0	1.4	국토교통부					
88	일산동구 산황동	815-6	구	29.0		0.0	1.5	국토교통부					
89	일산동구 산황동	681-3	구	234.0		0.0	0.6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	성명 및 명칭	주소	
90	일산동구 산황동	669-8	답	388.0		20.8	30.3	경기도					
91	일산동구 산황동	669-5	전	339.0	101.3			이*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269-83 (산황동)	근자당권	일산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92	일산동구 산황동	669-1	전	1674.0	391.0			이*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269-83 (산황동)	근자당권	일산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93	일산동구 산황동	655-2	구	2389.0		29.0		농림축산식품부					
94	일산동구 산황동	656-2	전	2273.0	605.9			서*원 외 2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83, 602동 1501호(주엽동 문촌마을)	근자당권	고양시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4	
95	일산동구 산황동	656-7	전	108.0		3.5		경기도					
96	일산동구 산황동	656-6	답	658.0		0.7		경기도					
97	일산동구 산황동	655-11	구	57.0		14.3		농림축산식품부					
98	일산동구 산황동	655-3	도	169.0		23.1		농림축산식품부					
99	일산동구 산황동	651-6	답	14.0		6.9		경기도					
100	일산동구 산황동	651-9	답	334.0		38.5		경기도					
101	일산동구 산황동	651-2	전	3735.0	292.1			오*석	고양군 중면 풍리 152				
102	일산동구 산황동	651-1	답	311.0	260.2			김*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278번길 17, 208동 2104호(중산동, 산들마을)				
103	일산동구 산황동	651-7	답	3.0		3.0		경기도					
104	일산동구 산황동	685-7	구	8.0		8.0		경기도					
105	일산동구 산황동	685-2	구	319.0	58.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106	일산동구 산황동	685	답	310.0	82.3			오*석	풍리 152				
107	일산동구 산황동	847	답	635.0	288.2			김*상	덕양구 동산동 285-9				
108	일산동구 산황동	847-2	답	11.0		11.0		경기도					
109	일산동구 산황동	846	답	1472.0	205.7			김*상	덕양구 동산동 285-9				
110	일산동구 산황동	846-1	답	363.0		0.7		경기도					
111	일산동구 산황동	845	전	3222.0	234.8			박*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844	근자당권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112	일산동구 산황동	841	구	993.0		6.7		농림축산식품부					
113	일산동구 산황동	841-2	구	18.0		17.2		농림축산식품부					
114	일산동구 산황동	837-4	구	6.0		5.6		농림축산식품부					
115	일산동구 산황동	837-1	구	254.0		15.7		농림축산식품부					
116	일산동구 산황동	838-3	답	9.0			9.0	경기도					
117	일산동구 산황동	838	답	969.0	668.6			인동장씨태상경공파 영심종친회외2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영삼길 15번길 17(석사동)				
118	일산동구 산황동	837	구	332.0		26.8		농림축산식품부					
119	일산동구 풍동	894-4	구	572.0		11.2		농림축산식품부					
120	일산동구 풍동	986	답	2053.0	565.5			임*옥	126				
121	일산동구 풍동	986-2	답	65.0		6.3	42.0	경기도					
122	일산동구 풍동	952-2	도	114.0		21.3		농림축산식품부					
123	일산동구 풍동	894-14	구	121.0		22.2		농림축산식품부					
124	일산동구 풍동	981-2	전	346.0		136.7		경기도					
125	일산동구 풍동	981	전	2649.0	68.2			안*현 외 1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35				
126	일산동구 풍동	981-1	답	100.0		18.3		경기도					
127	일산동구 풍동	894-9	구	1062.0		58.2		농림축산식품부					
128	일산동구 풍동	894-12	구	85.0		2.3		농림축산식품부					
129	일산동구 풍동	982-3	답	83.0		44.7		경기도					
130	일산동구 풍동	982-2	답	1.0		1.0		경기도					
131	일산동구 풍동	982	답	2201.0	150.4			김*년	서울 은평구 갈현동 12-355				
132	일산동구 풍동	983-1	답	430.0		19.6	65.8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	성명 및 명칭	주소	
133	일산동구 풍동	983	답	1996.0	104.2			장*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55 후곡마을 711-305	근저당권	신도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4	
134	일산동구 풍동	984-1	답	1270.0		10.7	39.0	경기도					
135	일산동구 풍동	984	답	472.0	332.8			장*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영삼길15번길 19 (식사동)	근저당권	신도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4	
136	일산동구 풍동	894	구	16255.0		82.9		농림축산식품부					
137	일산동구 풍동	971	답	2500.0	670.9			심*란 외 1 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1, 114동 2501호(마두동 백마마을)	근저당권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138	일산동구 풍동	971-2	답	261.0		13.8	9.6	경기도					
139	일산동구 풍동	971-1	답	1156.0			0.0	경기도					
140	일산동구 풍동	970-2	도	136.0		22.7		농림축산식품부					
141	일산동구 풍동	970-4	도	817.0		31.2		농림축산식품부					
142	일산동구 풍동	894-7	구	72.0		16.5		농림축산식품부					
143	일산동구 풍동	965-1	전	26.0		15.0		경기도					
144	일산동구 풍동	965	전	838.0	0.1			윤*용	서울 성동구 용답동 112-7				
145	일산동구 풍동	966	전	2225.0	48.4			윤*용	서울 성동구 용답동 112-7				
146	일산동구 풍동	966-2	전	179.0		42.1	41.2	경기도					
147	일산동구 풍동	967-2	전	78.0		13.7	30.2	경기도					
148	일산동구 풍동	967	전	881.0	11.0			이*원	산황동529-11	근저당권	일산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149	일산동구 풍동	968-2	전	70.0		15.7	46.2	경기도 외 1인					
150	일산동구 풍동	968-1	답	146.0			5.1	경기도					
151	일산동구 풍동	968	전	2076.0	59.6			이*원 외 1 인	산황동529-11	근저당권	일산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152	일산동구 풍동	969-2	답	18.0		0.9	10.9	경기도					
153	일산동구 풍동	96-40	구	158.0			4.2	경기도					
154	일산동구 풍동	100-4	구	4.0		1.0	2.4	경기도					
155	일산동구 풍동	969	답	2659.0	340.0			조*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55, 208동803호(풍동, 숲속마을)	근저당권	일산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156	일산동구 풍동	100-2	구	3.0	2.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57	일산동구 풍동	101-1	구	15.0		15.0		경기도					
158	일산동구 풍동	101-4	구	134.0		17.6	57.6	경기도					
159	일산동구 풍동	970-1	도	33.0	33.0			기획재정부					
160	일산동구 풍동	103-1	구	4.0		4.0		경기도					
161	일산동구 풍동	103-3	구	177.0		0.2	20.5	경기도					
162	일산동구 풍동	100-1	구	1.0		0.2		경기도					
163	일산동구 풍동	100-3	구	4.0			3.8	경기도					
164	일산동구 풍동	970-3	도	360.0		31.4		농림축산식품부					
165	일산동구 풍동	104-1	구	271.0		0.2		경기도					
166	일산동구 풍동	969-1	답	362.0		37.9	113.2	경기도					
167	일산동구 풍동	894-6	구	47.0			1.1	농림축산식품부					
168	일산동구 풍동	938	답	2361.0	606.7			이*옥	원당읍 식사리 산81				
169	일산동구 풍동	938-1	답	1149.0			5.3	경기도					
170	일산동구 풍동	937-2	도	35.0		19.7		농림축산식품부					
171	일산동구 풍동	937-4	도	85.0			19.5	농림축산식품부					
172	일산동구 풍동	894-5	구	24.0		14.3		농림축산식품부					
173	일산동구 풍동	894-16	구	17.0			2.6	농림축산식품부					
174	일산동구 풍동	936-3	답	34.0			11.7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	성명 및 명칭	주소	
175	일산동구 풍동	936-4	답	1108.0	86.2			장*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영십길 15번길 17(식사동)	자상원 근자상원	완강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36	
176	일산동구 풍동	936-1	답	47.0		42.9		경기도					
177	일산동구 풍동	108-3	구	115.0			14.4	경기도					
178	일산동구 풍동	108-2	구	5.0		5.0		경기도					
179	일산동구 풍동	110-3	구	5.0		5.0		경기도					
180	일산동구 풍동	110-4	구	103.0		0.0	26.4	경기도					
181	일산동구 풍동	936-6	답	1575.0	189.7			장*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영십길15번길 17(식사동)	자상원 근자상원	완강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36	
182	일산동구 풍동	937-1	도	99.0		99.0		농림축산식품부					
183	일산동구 풍동	937-3	도	342.0			70.2	농림축산식품부					
184	일산동구 풍동	936	창고	404.0	67.1			장*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영십길15번길 17(식사동)	근자상원	완강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36	
185	일산동구 풍동	936-5	도	26.0	25.8			장*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영십길15번길 17(식사동)	근자상원	완강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36	
186	일산동구 풍동	913-4	답	1.0			1.0	경기도					
187	일산동구 풍동	913-5	답	253.0		29.7		경기도					
188	일산동구 풍동	913-3	답	43.0		11.7	29.1	경기도					
189	일산동구 풍동	913	답	5467.0	449.6			장*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영십길15번길 17(식사동)	자상원 근자상원	완강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36	
190	일산동구 풍동	913-1	답	1.0		1.0		경기도					
191	일산동구 풍동	913-2	답	87.0		8.1	58.9	경기도					
192	일산동구 풍동	912	도	547.0		8.6		농림수산부					
193	일산동구 풍동	912-3	도	45.0		5.2	7.2	농수산부					
194	일산동구 풍동	894-10	구	41.0		6.4	21.0	농림축산식품부					
195	일산동구 풍동	911-4	답	29.0		10.9	14.9	경기도					
196	일산동구 풍동	911-2	답	1189.0	6.2			서*원	관산동 178-57 새서울아파트 1-505				
197	일산동구 풍동	911-1	도	3105.0		207.1	103.1	고양시					
198	일산동구 풍동	4-7	도	182.0		2.5	3.7	고양시					
199	일산동구 풍동	912-2	도	100.0		15.8	5.4	고양시					
200	일산동구 풍동	894-2	도	285.0		13.5	6.7	고양시					
201	일산동구 풍동	891-1	답	454.0	49.3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202	일산동구 풍동	892-1	도	3408.0		150.0	75.1	고양시					
203	일산동구 식사동	1465-1	도	660.0		64.7	32.2	고양시					
204	일산동구 식사동	1466-1	도	889.0		14.7	7.5	고양시					
205	일산동구 식사동	1462-1	도	157.0		13.8	6.9	고양시					
206	일산동구 식사동	1441-5	도	695.0		45.4	33.4	고양시					
207	일산동구 식사동	1454-1	도	540.0		67.6	49.3	고양시					
208	일산동구 식사동	1441-16	구	215.0		14.8	7.0	농림축산식품부					
209	일산동구 식사동	1453-3	답	792.0		112.6	81.5	고양시					
210	일산동구 식사동	1441-15	구	205.0		11.3	5.6	농림축산식품부					
211	일산동구 식사동	1443-1	전	501.0		52.2	25.8	고양시					
212	일산동구 식사동	1444-2	전	2540.0		161.0	79.6	고양시					
213	일산동구 식사동	1442-1	도	233.0		20.5	6.8	농림축산식품부					
214	일산동구 식사동	1441-13	구	77.0		8.0	2.7	농림축산식품부					
215	일산동구 식사동	1423-4	답	997.0		50.0	21.6	고양시					
216	일산동구 식사동	1423-1	도	314.0		6.6	3.3	경기도					
217	일산동구 식사동	1423-3	도	1247.0		26.8	13.4	경기도					
218	일산동구 식사동	567-12	도	592.0		11.4	5.7	경기도					
219	일산동구 식사동	567-3	도		2.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	성명 및 명칭	주소	
220	일산동구 식사동	980-4	도	1004.0		10.0	5.0	국토교통부					
221	일산동구 식사동	575-6	도	215.0		3.6	1.8	국토교통부					
222	일산동구 식사동	575-28	도	169.0		3.6	1.8	경기도					
223	일산동구 식사동	1421-1	구	160.0		15.9	7.9	농림축산식품부					
224	일산동구 식사동	1421-2	구	31.0		12.5	6.2	농림축산식품부					
225	일산동구 식사동	1421	구	308.0		119.4	53.2	농림축산식품부					
226	일산동구 식사동	1343-26	구	713.0		76.7	42.3	농림축산식품부					
227	일산동구 식사동	462-4	구	1979.0		654.4	299.4	고양시					
228	일산동구 식사동	1343-25	구	181.0		0.0	5.6	농림축산식품부					
229	일산동구 식사동	487-5	구	68.0		0.3	2.2	고양시					
230	일산동구 식사동	462-5	도	5804.0		0.4	20.6	기획재정부					
231	일산동구 식사동	1384-1	답	1096.0		8.5	8.0	고양시					
232	일산동구 식사동	1343-23	구	352.0		37.6	27.3	농림축산식품부					
233	일산동구 식사동	979-5	구	193.0		0.4	1.5	국토교통부					
234	일산동구 식사동	1383-2	전	453.0		0.0	1.9	고양시					
235	일산동구 식사동	433-8	구	952.0		88.2	45.1	고양시					
236	일산동구 식사동	460-2	도	210.0		11.9	6.1	기획재정부					
237	일산동구 식사동	457-2	도	119.0		21.1	10.3	기획재정부					
238	일산동구 식사동	975-4	도	752.0		81.7	40.6	국토교통부					
239	일산동구 식사동	431-4	도	3442.0		76.7	44.4	기획재정부					
240	일산동구 식사동	433-5	도	162.0		17.1	8.6	기획재정부					
241	일산동구 식사동	1367	답	1842.0		128.7	63.1	고양시					
242	일산동구 식사동	1343-18	구	1259.0		53.0	53.5	농림축산식품부					
243	일산동구 식사동	433-6	도	86.0		12.7	6.3	기획재정부					
244	일산동구 식사동	430-5	도	53.0		3.1	2.9	기획재정부					
245	일산동구 식사동	430-7	도	561.0		16.3	18.1	기획재정부					
246	일산동구 식사동	430-6	도	388.0		37.2	34.4	기획재정부					
247	일산동구 산향동	577-44	구	519.0		19.2	24.0	농림축산식품부					
248	일산동구 산향동	577-39	구	265.0		0.0	0.4	농림축산식품부					
249	일산동구 산향동	577-25	구	135.0		3.0	14.1	농림축산식품부					
250	일산동구 산향동	577-15	구	120.0		7.0	10.7	농림축산식품부					
251	일산동구 산향동	680-3	구	467.0		32.3	40.4	경기도					
252	일산동구 산향동	680-2	구	288.0		20.8	26.0	고양시					
253	일산동구 산향동	679-2	구	678.0		29.2	36.5	고양시					
254	일산동구 산향동	575-14	구	388.0		0.6	0.8	농림축산식품부					
255	일산동구 산향동	684-5	도	10.0		1.7	2.0	농림축산식품부					
256	일산동구 산향동	683-8	대	25.0		0.0	0.1	고양시					
257	일산동구 산향동	683-12	대	23.0	0.2			윤*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향동 683-5				
258	일산동구 산향동	684-7	도	14.0		2.8	3.3	농림축산식품부					
259	일산동구 산향동	684-1	도	1339.0		305.9	372.3	농림축산식품부					
260	일산동구 산향동	675-2	답	2758.0	0.1			장*현	풍리 455				
261	일산동구 산향동	675-1	전	2991.0	6.7			이*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 304동 502호(식사동, 은행마을0		일산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262	일산동구 산향동	674-3	답	1313.0	2.7			하*심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미석3길 7-62	근자양권	영주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주시 고성로 25(조암동)	
263	일산동구 산향동	674-2	전	3746.0	1.3			이*환	풍리 441				
264	일산동구 산향동	672-6	전	313.0	2.0			박*길	672-1				
265	일산동구 산향동	684-3	하천	38.0		1.7	8.4	농림축산식품부					
266	일산동구 산향동	672-5	하천	977.0		6.8	13.8	고양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	성명 및 명칭	주소	
267	일산동구 산황동	730-2	하천	5866.0		16.4	20.5	고양시					
268	일산동구 산황동	549-5	하천	3003.0		11.2	24.7	고양시					
269	일산동구 산황동	671-2	전	1083.0	21.2			이*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49 701동 1102회죽전동, 도담마을7단지 프리에체아파트)	근자강권	수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20	
270	일산동구 산황동	671-1	전	1809.0	68.4			이*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49 701동 1102회죽전동, 도담마을7단지 프리에체아파트)	근자강권	수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20	
271	일산동구 산황동	671-6	철도	207.0		1.5	1.8	국토교통부					
272	일산동구 산황동	549-1	구	386.0	1.8			기획재정부					
273	일산동구 산황동	731-2	철도	601.0		1.7	2.2	국토교통부					
274	일산동구 백석동	78-12	철도	7079.0		22.1	27.7	국토교통부					
275	일산동구 백석동	1185-2	철도	70.3		1.0	1.3	국토교통부					
276	일산동구 백석동	1185	공원	24804.4		31.8	39.7	고양시					
277	일산동구 백석동	1401	도	26081.0		24.4	45.1	고양시					
278	일산동구 백석동	1399	도	10799.8		352.4	438.8	고양시					
279	일산동구 백석동	1398	도	18428.3		28.0	35.0	고양시					
280	일산동구 백석동	1368	도	21264.1		691.7	874.2	고양시					
281	일산동구 백석동	1538	도	56851.9		31.9	39.9	고양시					
282	일산동구 백석동	1509	도	12509.6		394.8	493.5	고양시					
283	일산동구 백석동	1508	도	47848.0		28.5	35.6	고양시					
284	일산동구 백석동	1461-2	공원	18156.2		18.6	23.2	고양시					
285	일산동구 백석동	906-80	구	6237.0	118.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86	일산동구 백석동	915-18	도	85.0		2.3	2.9	국토교통부					
287	일산동구 장항동	514	도	662.0		28.2	35.1	농림축산식품부					
288	일산동구 장항동	514-45	구	304.0	34.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89	일산동구 장항동	514-44	구	450.0	49.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0	일산동구 장항동	514-43	구	304.0	35.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1	일산동구 장항동	514-42	구	73.0	13.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2	일산동구 장항동	514-41	구	298.0	48.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3	일산동구 장항동	514-40	구	248.0	5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4	일산동구 장항동	514-39	구	86.0	29.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5	일산동구 장항동	0-3가	구	-	11.2								
296	일산동구 장항동	514-38	구	86.0	25.5			고양농지개발조합	도당동345				
297	일산동구 장항동	514-37	구	152.0	60.2			김*지	438				
298	일산동구 장항동	514-36	구	60.0	29.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9	일산동구 장항동	514-35	구	93.0	43.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0	일산동구 장항동	514-34	구	126.0	68.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1	일산동구 장항동	514-33	구	112.0	80.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2	일산동구 장항동	514-32	구	53.0	53.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3	일산동구 장항동	514-31	구	3.0	0.7			윤*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191-8				
304	일산동구 장항동	514-30	구	50.0	48.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5	일산동구 장항동	지번없음	구	-	117.5								
306	일산동구 장항동	514-16	구	4743.0	643.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7	일산동구 장항동	514-3	구	6463.0	804.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	성명 및 명칭	주소	
308	일산동구 장항동	437-8	구	8508.0	558.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09	일산동구 장항동	507-55	구	198.0	15.9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10	일산동구 장항동	507-54	구	893.0	83.1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11	일산동구 장항동	507-53	구	87.0	6.5			윤*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191-8	자상원	국도교통부	구분지상권설정	
312	일산동구 장항동	507-52	구	119.0	11.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13	일산동구 장항동	507-49	구	816.0	89.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14	일산동구 장항동	507-48	구	450.0	51.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15	일산동구 장항동	507-45	구	393.0	78.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16	일산동구 장항동	507-44	답	172.0	35.8			김**준	서울 성북구 돈암동				
317	일산동구 장항동	507-43	구	466.0	36.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18	일산동구 장항동	507-42	구	681.0	73.8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19	일산동구 장항동	507-40	구	407.0	65.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20	일산동구 장항동	507-39	구	271.0	64.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21	일산동구 장항동	507-37	구	588.0	1.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22	일산동구 장항동	507-36	구	139.0	63.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1 (빛가람동)				
323	일산동구 장항동	507-35	구	93.0	3.8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2 (빛가람동)				
324	일산동구 장항동	507-34	구	572.0	94.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25	일산동구 장항동	507-33	구	63.0	11.9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26	일산동구 장항동	507-32	구	298.0	83.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27	일산동구 장항동	507-31	구	215.0	106.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28	일산동구 장항동	507-30	구	20.0	18.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29	일산동구 장항동	507-29	구	56.0	5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30	일산동구 장항동	507-28	구	39.0	39.0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331	일산동구 장항동	507-27	구	23.0	23.0			경기도(교육감)					
332	일산동구 장항동	507-26	구	99.0	64.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33	일산동구 장항동	507	도	1593.0	93.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34	일산동구 장항동	507-24	구	1198.0	339.1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35	일산동구 장항동	507-60	구	80.0	1.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36	일산동구 장항동	507-23	구	170.0		3.7	4.7	고양시					
337	일산동구 장항동	507-22	구	1422.0		39.6	49.5	고양시					
338	일산동구 장항동	507-61	구	8.0		0.2	0.2	고양시					
339	일산동구 장항동	507-20	도	267.0		7.7	13.4	고양시					
340	일산동구 장항동	507-59	구	80.0		1.3	5.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	성명 및 명칭	주소	
341	일산동구 장항동	507-19	구	322.0		16.0	2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42	일산동구 장항동	507-17	구	773.0		17.4	21.7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43	일산동구 장항동	507-15	구	556.0		12.0	1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44	일산동구 장항동	507-14	구	243.0		6.8	8.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45	일산동구 장항동	507-12	구	737.0		31.1	38.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46	일산동구 장항동	507-10	구	1194.0		35.6	44.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47	일산동구 장항동	507-9	구	1005.0		28.3	35.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48	일산동구 장항동	507-7	구	1763.0		44.8	5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49	일산동구 장항동	507-3	구	239.0		7.5	9.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50	일산동구 장항동	440-11	구	2772.0		93.4	115.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1	일산동구 장항동	440-41	구	202.0		8.4	10.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2	일산동구 장항동	440-40	구	258.0		14.4	18.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3	일산동구 장항동	440-37	구	319.0		17.3	20.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4	일산동구 장항동	440-113	구	127.0		0.4	1.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5	일산동구 장항동	440-114	구	232.0		0.3	1.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6	일산동구 장항동	440-115	구	46.0		7.4	8.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7	일산동구 장항동	440-111	구	136.0		13.2	16.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8	일산동구 장항동	440-46	구			9.4	11.8						
359	일산동구 장항동	506-5	구	161.0		11.3	14.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60	일산동구 장항동	447-57	구	509.0		43.3	54.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61	일산동구 장항동	656-56	도	906.0		9.7	12.1	고양시					
362	일산동구 장항동	656-63	답	888.0		28.2	35.2	고양시의 1인					
363	일산동구 장항동	656-65	답	459.0		12.1	20.0	박*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12-26 지층-1				
364	일산동구 장항동	656-36	대	354.0		9.7	7.2	박*수	성북구 서대문구 홍은동 412-26 지층-1				
365	일산동구 장항동	655-24	구	103.0		2.5	3.1	고양시					
366	일산동구 장항동	655-23	전	1301.0		81.6	102.1	고양시					
367	일산동구 장항동	655-17	전	2039.0		2.8	3.5	고양시					
368	일산동구 장항동	655-22	구	163.0		5.5	6.9	고양시					
369	일산동구 장항동	655-26	답	1289.0		14.4	18.0	고양시					
370	일산동구 장항동	447-56	구	2230.0		41.8	52.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71	일산동구 장항동	501-1	구	204.0		10.1	12.6	고양시					
372	일산동구 장항동	449-5	구	1347.0		26.2	32.8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73	일산동구 장항동	655-21	구	234.0		24.3	30.4	농림축산식품부					
374	일산동구 장항동	652-27	도	163.0		0.0	0.0	고양시					
375	일산동구 장항동	652-7	도	7143.0		7.6	12.9	농림축산식품부					
376	일산동구 장항동	655-2	구	1539.0		59.8	71.2	농림축산식품부					
377	일산동구 장항동	1821	도	14410.2		776.7	966.2	고양시					
378	일산동구 장항동	1820	공원	15017.3		0.0	1.5	고양시					
379	일산동구 장항동	641-31	구	9444.0		6.0	7.5	농림축산식품부					
380	일산동구 장항동	636-12	전	2834.0		27.0	33.7	김*옥 외 5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64 성북힐스테이트 101동 905호				
381	일산동구 장항동	636-1	답	3174.0		25.5	31.8	기획재정부					
382	일산동구 장항동	636-2	전	2309.0		18.8	23.5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4(권선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	성명 및 명칭	주소	
383	일산동구 장항동	636-13	전	4251.0		38.0	47.5	김*형 외 1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33 가락동현대빌라 비-202				
384	일산동구 장항동	636-4	답	947.0		7.3	9.2	기획재정부					
385	일산동구 장항동	636-14	전	2424.0		23.8	29.8	경기주택도시공사 외 1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386	일산동구 장항동	636-6	전	1007.0		8.3	10.3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387	일산동구 장항동	636-10	전	3890.0		31.9	39.9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388	일산동구 장항동	636-7	답	2974.0		23.6	29.5	박*채 외 4인	540, 2층				
389	일산동구 장항동	636-11	답	1029.0		9.6	11.9	기획재정부					
390	일산동구 장항동	634-7	구	1630.0		0.0	0.2	농림축산식품부					
391	일산동구 장항동	642-8	구	23543.0		434.6	543.2	농림축산식품부					
392	일산서구 대화동	1950-10	구	882.0		57.7	72.1	농림축산식품부					
393	일산서구 대화동	1950-7	답	1473.0		23.0	28.8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394	일산서구 대화동	1948-7	구	32.0		2.6	3.2	농림축산식품부					